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1주년 기념식 및 토론회 자료집

일시 Ⅵ 2013년 1월 26일(토) 오후 2시

장소 Ⅵ 서울특별시교육청 본청 11층 강당

주최 Ⅵ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 학생참여단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참여단, 학생인권위원회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1주년 기념식 및 토론회 자료집

일시 ॥ 2013년 1월 26일(토) 오후 2시

장소 ॥ 서울특별시교육청 본청 11층 강당

주최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 학생참여단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
학생참여단, 학생인권위원회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1주년 기념식 및 토론회

주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참여단, 학생인권위원회
 일시: 2013년 1월 26일 (토) 14:00 ~ 17:00
 장소: 서울특별시교육청 본청 11층 강당
 후원: 서울특별시교육청
 문의: 02-3999-086 / www.st-rights.or.kr

모시는 글

서로가 존중하고 협력하는 학교
 인권과 평화가 넘실대는 학교문화 만들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1주년을 맞이하는 의미깊은
 기념 행사에 참석하시어 함께 축하해주시길 바랍니다.

학생참여단 대표단
 학생인권위원회 위원장 드림

<자료집 목차 >

식순	5
개회사 (학생인권위원장 한상희 , 학생참여단 대표 손현수)	6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추진경과	7
학생인권위원회 활동보고	12
학생참여단 활동보고	15
발제 1. (학생참여단 서준영) 학생인권조례 시행1년, 서울학생인권 실태보고	17
발제 2. (학생인권위원 홍성수) 학생인권조례 안착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방안	29
발제 3. (고등학생 정진) 학생이 생각하는 학생인권조례 1년과 안착방안	
발제 4. (영림중학교 생활지도부장 이명남) 학생인권조례 안착을 위한 교사의 역할 1 생활지도 혁신사례	

발제 5. (OO고등학교 교사 이윤승)
학생인권조례 안착을 위한 교사의 역할 2 교사의 실천사례

발제 6. (학부모 김태정)
학생인권조례 안착을 위한 학부모의 역할
[뇌과학을 통해 바라본 학생인권]

[참고자료]

식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1주년 기념식 및 토론회

1부 기념식

- * 축하마술 - 이기규 (서울 수송초등학교 교사)
- * 국민의례
- * 개회사
- * 축사
- * 영상시청
- * 경과보고
- * 감사패 증정
- * 축하공연 - 스트랩소디 (고등학생 밴드)

2부 토론회

* 개회사 - 사회자

1부 발제

- : 서울학생인권조례 시행 1년을 돌아보다
- 학생참여단 서준영
- 학생인권위원회 홍성수

2부 발제

- : 서울학생인권조례 안착화를 위한 교육주체의 역할
- 고등학생 정진
- 영림중학교 교사 이명남
- OO 고등학교 교사 이윤승
- 학부모 김태정

3부 종합토론

- 참가자 일동

폐회사

기념식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1주년 기념식 개최사

우리 학생들이 평화롭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서울시민들이 뜻과 마음을 한데 모아 제정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가 이제 공포되어 시행된 지 일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추운 날씨와 바쁘신 일정 속에도 서울교육에 피어난 평화와 인권의 싹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무릇 아이들은 그 누구와 다를 바 없는 기본적 인권의 주체이며 어떠한 이유에서도 차별받지 않고 신체적, 정신적, 도덕적, 영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불가침의 권리를 가집니다. 그러기에 모든 사람들은 우리 아이들이 우정과 평화, 형제애의 정신으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존중하고 배려해야 할 막중한 의무를 지게 됩니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는 이와 같은 요청들이 아름답게 실천되는 인권과 평화와 행복의 학교공동체를 만들어내기 위한 디딤돌이 되고자 합니다. 유엔고등인권판무관실의 촉박처럼 우리나라의 학교 환경에서 아동과 청소년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어 중요한 초석으로 기능하고자 합니다. 학생들이 자유롭고 행복한 삶의 주체로 거듭나게끔 하기 위하여 수많은 서울시민들이 피땀어린 서명을 통해 이 조례를 주민발의에 의해 제정된 우리나라 최초의 법규범으로 일구어내었다는 사실은 이런 시대의 요청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조례의 시행과정에는 수많은 우여곡절과 고통과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평화롭고 행복한 학교를 희망하며 몸과 마음으로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과 매순간 아낌없이 헌신해 주신 교육주체들이 계셨기에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참여단과 학생인권위원회, 학생인권센터 등의 모양새들을 갖추어 낼 수 있었고 학교현장에서 미약하나마 그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조례의 시행을 기념하는 자리를 빌어 다시금 진심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아쉽게도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의 첫들은 온전한 축하와 격려로만 채워져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폭력과 반인권이라는 도전은 여전합니다. 일각에서는 민주적인 학교와 인권친화적 학교를 꿈꾸는 많은 노력들이 흔들릴 것이라는 예상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 우리의 열정과 지혜와 사랑이 어우러진다면 이런 고난들은 학생인권이 꽃 피는 학교공동체를 만들어내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첫들을 맞이하는 우리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를 다함께 축하해주시고, 그리고 이 기쁨을 계속 이어, 협력과 소통으로 심어진 인권과 평화의 나무가 우리의 학교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모두의 손을 맞잡고 함께 나아갑시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2013.1.26.

학생참여단 대표 손현수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장 한상희

기념식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추진 경과보고

2010년

- 07. 07.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발족
- 09. 09. 경기도학생인권조례 도의회 통과. 전국 최초 학생인권조례 제정
- 10. 05. 경기도학생인권조례 공포. 학교생활규정 개정 권고
- 10. 06.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주최, 서울학생인권조례 시민제안마당 개최
- 10. 27.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주민발의(안) 서명 개시('10.10.27~' 11.4.26)
- 11. 09. 서울교육청 '학생인권 및 생활지도 혁신 자문위원회' (아래 서울교육청 자문위) 위촉식 및 제1차 전체회의
- 11. 23. 서울교육청 자문위 워크숍
- 12. 01. 서울교육청 자문위 생활지도혁신분과회의(1차)
- 12. 06. 서울교육청 자문위 학생인권조례분과회의(1차)
- 12. 11. 서울교육청 자문위 생활지도혁신분과 워크숍
- 12. 20. 서울교육청 자문위 학생인권조례분과회의(2차)
- 12. 21. 서울교육청 자문위 제2차 전체회의

2011년

- 04. 05. 서울교육청 자문위, 서울국공립고등학교 교장회 방문 의견수렴
- 04. 12. 서울교육청 자문위, 서울 사립중고등학교 교장회 방문 의견수렴
- 04. 19. 서울교육청 자문위, 한국교총 방문 의견수렴
- 04. 20. 서울교육청 자문위, 생활교육혁신을 위한 '생활교육 혁신 연속 토론회' 개최(1회)
※ 연속토론회 주제 : 교사, 교권을 말한다(4.20)
- 04. 22. 서울교육청 자문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지역 순회 공청회(동부-동부교육지원청)
- 04. 27. 서울교육청 자문위, 학생인권 관련 연구 용역 추진(4.27~8.31)
※ 연구과제명 : 서울지역 학생인권실태 조사 분석 및 서울학생 인권 조례안 개발에 관한 연구
- 05. 01.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개소(4개 권역별 인권침해 상담조사)
- 05. 03. 서울교육청 자문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지역 순회 2차 공청회(서부-서부교육지원청)
- 05. 03. 서울교육청 자문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지역 순회 3차 공청회(남부-여의도 중학교)

- 05. 11. 서울교육청 자문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지역 순회 4차
공청회(북부-창일중학교)
- 05. 11. 서울교육청 자문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지역 순회 5차
공청회(중부-성동공업고)
- 05. 17. 서울교육청 자문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지역 순회 6차
공청회(강동-문정고등학교)
- 05. 17. 서울교육청 자문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지역 순회 7차
공청회(강서-송정초등학교)
- 05. 17. 서울교육청 자문위, 서울초등학교 교장회 방문 의견수렴
- 05. 18. 서울교육청 자문위, 생활교육혁신을 위한 '생활교육 혁신 연속 토론회' 개최(2회)
※ 연속토론회 주제 : 따돌림 · 폭력 없는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5.18)
- 05. 19. 서울교육청 자문위, 초등교감 대상 학생인권조례 의견수렴
- 05. 20.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서울시민의 힘으로 학생인권의 찬란한 봄을
꽃피웠습니다" 라는 제목의 기자회견 개최 후 주민발의 청구인 명부 총
8만5281장 교육청에 제출
- 05. 24. 서울교육청 자문위, 전교조 방문 의견수렴
- 05. 24. 서울교육청 자문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지역 순회 8차
공청회(강남-서울고등학교)
- 05. 24. 서울교육청 자문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지역 순회 9차
공청회(동작-강남중학교)
- 05. 25. 서울교육청 자문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지역 순회 10차
공청회(성동-선화예술고)
- 05. 25. 서울교육청 자문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지역 순회 11차
공청회(성북-한신대학교)
- 05. 31. 서울교육청 학생생활지도정책자문위원회(아래 '서울교육청 자문위') 1차 회의
(자문위운영 조례 제정에 따른 위원 구성 변경)
- 06. 02. 서울교육청 자문위, 학생인권조례 의견수렴을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6.2.~6.15.)
- 06. 10. 서울교육청 자문위, 한교조 방문 의견수렴
- 06. 21. 서울교육청 자문위 2차 회의(학생인권조례 초안 검토)
- 06. 22. 서울교육청 자문위, 생활교육혁신을 위한 '생활교육 혁신 연속 토론회' 개최(3회)
※ 연속토론회 주제 : 생활평점제 운영 현황과 개선방안(6.22)
- 07. 01. 학생생활지도대안 마련 및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각 학교 의견수렴
※ 총 733개 교 회신 (7.1 ~ 7.12.)
(초 : 312개 교, 중 : 247개 교, 고 : 163개 교, 유치원 : 6개 원, 특수학교 : 5개 교)
- 07. 05.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추가 청구인명부 제출
※ 1차 제출한 청구인 명부 가운데 유효 명부 부족으로 확인되어 보정 서명을 받아

- 제출
- 07. 05. 서울교육청 자문위 3차 회의(학생인권조례 초안 추가 검토)
- 07. 11. 서울교육청 자문위, 고교 학생회장 대상 의견수렴
- 07. 20. 서울교육청 자문위, 생활교육혁신을 위한 '생활교육 혁신 연속 토론회' 개최(4회)
※ 연속토론회 주제 : 학생인권조례시대, 생활지도 근본대안 모색(7.20)
- 07. 20. 서울교육청 자문위 4차 회의(학생인권조례 초안 추가 검토)
- 07. 29. 교육청, 학생생활지도 근본대안 수립을 위한 TFT 구성·운영
(7.29~8.18)
- 08. 03.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청구 수리
※ 법정 인원 충족(97,702명)
- 08. 19. 서울교육청 자문위 5차 회의
※ 학생인권조례 연구 용역 결과 및 학생생활지도 TFT 결과 반영
- 09. 07. 서울교육청 자문위, 서울학생인권조례 초안 및 학생생활지도혁신방안 발표 및
기자회견
- 09. 07. 서울교육청 자문위, 학생인권조례 주제별 의견수렴(홈페이지 9.7~9.27)
- 09. 08. 서울교육청 자문위, 학생인권조례 초안 및 학생생활지도혁신방안 의견수렴을 위한
종합공청회 개최(교육연수원)
- 09. 27. 서울교육청 자문위 6차 회의(학생인권조례 초안 수정)
※ 학생인권조례 종합공청회 의견수렴 결과 반영
- 09. 30.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시의회 이송
- 10. 05. 광주학생인권조례 시의회 통과
- 10. 11. 서울교육청 자문위, 서울학생참여위원회 의견수렴
- 10. 13. 서울교육청 자문위, 서울학생인권조례 시안 교육청에 제출
- 10. 14. 교육청 국·과장 회의-자문위 제출안에 대한 의견수렴
- 10. 19. 지역교육청 교육지원국장 의견수렴
- 10. 25. 지역교육청 초등교육지원과장 의견수렴
- 10. 27. 지역교육청 중등교육지원과장 의견수렴
- 10. 14. 교육청 국·과장 회의-자문위 제출안에 대한 의견수렴
※ 교육청 발의 조례안은 의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10월말 결정
- 11. 17. 광주학생인권조례 공포
- 11. 18. 서울교육청 자문위 7차 회의(학생인권조례 향후 추진 계획)
- 12. 05. 학생인권조례제정 경남본부, 경남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청구인 명부 도교육청에
제출
- 12. 19.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수정안 시의회 통과
※ 서울시의회, 주민발의안과 교육청 자문위 시안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정안 마련

2012년

- 01. 26.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공포(조례 제5247호)
교육과학기술부, 대법원에 조례무효확인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 01. 27. 서울교육청, 조례에 따른 학칙 개정 안내 공문 발송
- 01. 30.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청 학칙 개정 중단 시정명령
- 02. 15.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청 학칙 개정 지시 정지 처분
- 02. 29. 서울교육청, 대법원에 교육과학기술부 정지 처분 취소소송 청구
- 04. 01. 학생인권교육센터 설치 및 신규 조사관 채용(조례 제42조)
- 04. 20. 초중등교육법 개정 시행령 공포. 교육과학기술부, 개정 시행령에 따라 학생인권조례 일부 조항 실효 선언
- 04. 24. 학생인권옹호관 운영 조례 입법예고(조례 제38조)
- 04. 24. 서울 학생인권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조례 제51조)
- 05. 04. 서울학생인권조례 시행 100일 맞이, <조례 이행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학생인권 수호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개최
- 05. 04. 서울교육청 후원, <100일 기념 토크 콘서트: 서울학생인권조례를 말하다!> 개최
- 05. 17. 학생참여단 발단식 및 대표단 구성(조례 제37조)
- 05. 24. 학생참여단 대표단 간담회(조례 제37조)
- 05. 24. 서울교육청, 초중등교육법 개정 시행령에 따라 학교규칙을 제·개정하더라도 서울학생인권조례의 내용과 취지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는 공문 전달
- 05. 31. 학생인권위원회 위원 위촉 및 구성(조례 제33조)
- 06. 05. 법제심의회 학생인권옹호관 조례 및 시행규칙 수정의결
- 06. 07. 학생인권옹호관 조례 및 시행규칙 시의회 이송
- 06. 08. 학생인권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정기회)
- 06. 17. 학생참여단 간담회(연수 캠프 등 기획단 구성, 카페 개설방안 논의)
- 06. 22. 학생인권조례 시행규칙 공포(규칙 제822호)
- 07. 09. 학생인권옹호관 운영 조례 시의회 통과(1차)
- 07. 13. 학생인권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임시회)
- 07. 13. 교육과학기술부 요구를 받아들여 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 조례 재의 요구(1차)
- 07. 19. 학생참여단 제1차 전체회의(학생참여단 및 학생참여위원회 연수)
- 08. 13. 학생참여단 제2차 전체회의
- 08. 14. 학생인권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정기회)
- 08. 17. 학생인권위원회,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종합 권고에 대한 입장문' 발표. 국가인권위 권고에 대한 종합적 판단 및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생활기록부 기재 정책의 문제점 언급

- 08. 27. 학생인권옹호관 조례 부결(1차)
- 09. 21. 학생인권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임시회)
- 09. 25. 학생인권옹호관 운영 조례안 발의(2차, 시의회 발의)
- 10. 02. 학생인권위원회, "학생인권조례의 흔들림 없는 시행은 시대의 요청이자 교육의 사명이다" 성명서 교육청에 전달.
※ 광노현 전 교육감의 교육감직 상실 이후 교육청의 변함없는 책무 촉구
- 10. 06. 학생참여단 제3차 전체회의
- 10. 12. 학생인권옹호관 운영 조례 시의회 의결(2차)
- 10. 15. 학생참여단, 서울학생인권조례 위반 실태조사 돌입
- 10. 16. 학생인권위원회, 대법원의 학생인권조례 관련 소송에 대한 판결 촉구 기자회견 개최.
현장 혼란 최소화 주문
- 10. 23. 학생인권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정기회)
- 11. 02. 학생인권옹호관 운영 조례 재의 요구(시의회 계류중)
- 11. 03. 학생참여단, 학생인권조례 홍보 거리 캠페인 및 실태조사
- 11. 20. 학생인권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임시회)
- 12. 14. 학생인권위원회 정책 워크숍 개최(1년 평가 및 과제 도출)

2013년

- 01. 09. 학생인권위원회 제7차 전체회의(임시회)
- 01. 12. 학생참여단 제4차 전체회의
- 01. 16. 강원교육청, 강원도 학교 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 01. 22. 전북도의회 장영수 의원 외,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안 입법 발의
- 01. 26. 학생인권위원회·학생참여단 주최, 서울학생인권조례 1주년 기념식 및 토론회 개최

기념식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 활동보고

- 배경내(학생인권위원회 부위원장)

1. 주요 경과

- 2012년 5월 31일 학생인권위원회 구성
 - * 정기회의는 2월, 5월, 8월, 10월 개최기로 협의
- 2012년 6월 8일 1차 전체회의(정기회)
- 2012년 7월 13일 2차 전체회의(임시회)
- 2012년 8월 14일 3차 전체회의(정기회)
- 2012년 9월 21일 4차 전체회의(임시회)
- 2012년 10월 23일 5차 전체회의(정기회)
- 2012년 11월 20일 6차 전체회의(임시회)
- 2012년 12월 14~15일 정책워크숍 개최
- 2013년 1월 9일 7차 전체회의(임시회)

2. 주요 활동

□ 위원회 체제 정비

- 소위원회 구성 : 권리구제 소위, 인권교육 소위, 기획.홍보 소위
 - * <첨부자료 1> 참고
- 권리구제 소위 : 학생인권조례 이행 현황 실태조사 제안, 여론 수렴 토론회 개최 제안, 권리구제지침안 마련
 - 인권교육 소위 : 인권교육 가이드라인과 표준교안 마련 제안, 학교 내 인권(교육) 담당자 지정 제안, 인권교육 강화 주문
 - 기획.홍보 소위 : 조례 이행을 위한 5단계 인프라 구축과 교육청 지원 체계 방안 수립, 제안, 교육청 실행 기구 구성 제안, 학생인권종합계획 수립 제안
- 학생인권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마련
- 2013년 인권교육센터 예산 편성 요구내역 검토
- 학생인권침해 상담 및 조사 청구에 따른 직무수행 지침안 마련

□ 학생인권조례 정착화 지원

- 인권교육센터 상담과 업무 처리 현황에 대한 정기적 검토와 권고
-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종합 권고에 따른 교육청 이행 계획 검토와 위원회 입장 발표(2012.08.17)

* 국가인권위 권고에 대한 종합적 판단 & 학교폭력 조치 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문제에 대한 위원회 의견 발표

- 학생인권조례 안착을 위한 현장 실태 점검 및 이후 조치 사항 권고
- 광노현 교육감 대법원 선고 이후, “학생인권조례의 흔들림 없는 시행은 시대의 요청이자 교육의 사명이다” 성명서 발표 후 부교육감 전달 (2012.10.02)
- 대법원의 학생인권조례 판결 촉구 기자회견 및 권한대행의 학칙개정조사 공문 발송에 대한 항의서한 발표(2012.10.16)
- 문용린 신임 교육감 면담하고, 학생인권조례 지원 당부(2013.01.09)

□ 학생 권리 구제

- A고등학교 학생의 종교 강요 진정사건 처리(8월 임시회)
 - * 민원 제기자인 홍서정 학생은 학교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자퇴하기에 이룸. 이후 홍서정 씨는 2012년 12월 12일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
- B초등학교 학부모의 민원 처리 (8월 임시회)
 - * 과잉 징계에 관한 민원 제기
- C고등학교 학생회장 선거 관련 긴급구제 신청에 대한 결정문 전달 (위원회 명의로 이루어진 최초의 권리 구제 결정)
 - * 학생회장 선거 재선거로 마무리, 규정 개정 추진

3. 남은 과제

- 조례의 존재, 정신, 취지, 내용 등이 학교 현장에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홍보, 교육 활동 강화
- 학생인권옹호관 운영 조례가 2차례의 걸친 재의 요구로 현재 의회 계류중에 있음. 옹호관 조례 통과를 통해 조례의 안정적 시행과 권리 구제의 실효성 확보가 관건
- 학생인권위원회의 심의.권고 사항이 교육청에 수용되고 이행될 수 있도록 모니터 강화와 대책 수립
- 조례의 충실한 이행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장.단기 과제 수립과 시행 촉구 활동 강화
- 소위원회 활동 활성화
- 학생인권교육센터, 학생참여단과의 협력 로드맵 구체화
 - * 자세한 평가와 과제는 2부 토론회 자료집으로 대체

소위	성명	소속 및 직위	업무내용
권리구제 소위원회	한상희 (위원장)	건국대학교 교수	조례 제33조제2항제3호 o 학생인권침해 사안이 중 대하여 특별한 구제조치가 필요한 사인의 심의 및 구 제조치 권고
	김동엽	교육자치시민회 대표	
	김명신	서울특별시의회 시의원	
	김혜정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편집위원장	
	김인식	학생인권조례제정 운동 서울본부 활동가	
	백미순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인권교육 소위원회	박경신	고려대학교 교수	조례 제29조제2항 o 학생인권교육에 대한 계 획 심의 등 인권교육 관련
	이영주	교사	
	김수현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운영위원	
	윤종서	신림고 학생	
기획·홍보 소위원회	윤명화	서울특별시의회 시의원	조례 제33조제2항제1호, 제2호 o 학생인권침해 사안이 중 대하여 특별한 구제조치가 필요한 사인의 심의 및 구 제조치 권고
	배경내 (부위원장)	인권교육센터 '들' 상임활동가	
	이영일	홍사단 청소년연구원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	
	변춘희	어린이책시민연대	
	김혜주	화원중 학생	

기념식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참여단 활동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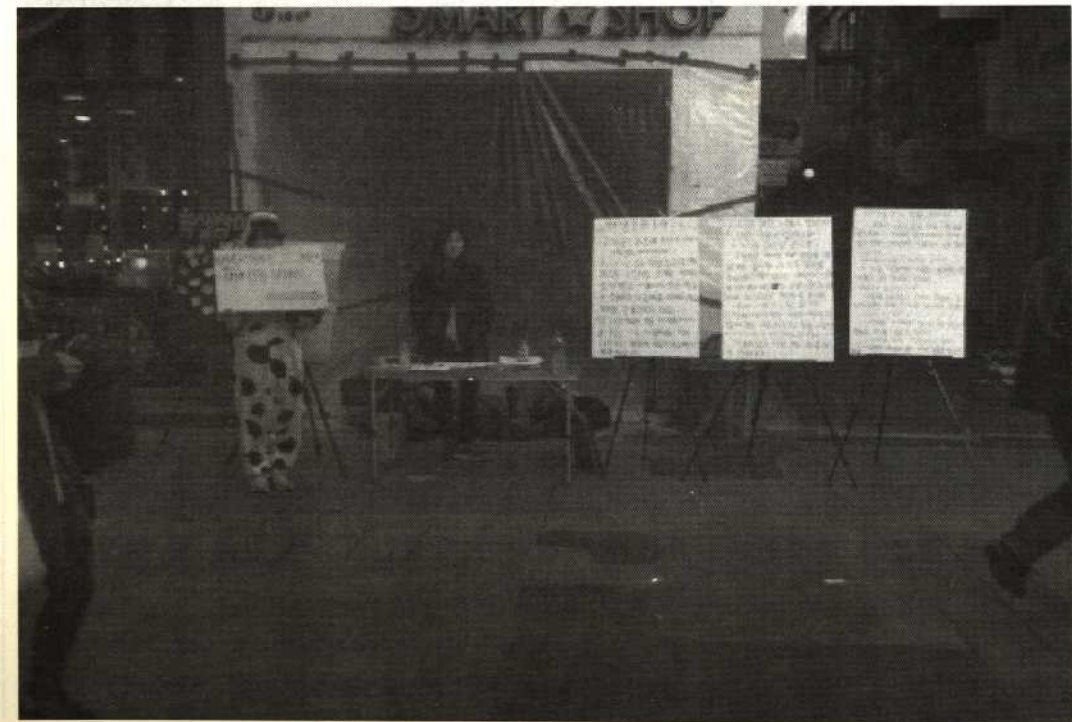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참여단 김수경

<총회개최실적>

회차	일시	종류	내용
1	12.07.19	정기회	참여단 운영/ 활동계획수립
2	12.08.13	임시회	교육정책에 대한 학생 의견 제시
3	12.10.06	임시회	팀별 활동경과보고/ 차후계획수립
4	12.01.12	정기회	반성/ 기타안건

총 4회의 총회를 개최하였고, 매주 토요일, 집행부 회의를 개최하였음.

<학생인권조례 안내 홍보활동>





총 2회의 거리 홍보와 학생인권실태조사 실시하며 학생인권조례 안내 및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음.

<실태조사 결과 등은 학생참여단 발제에 첨부된 자료와 동일함.>

1부 발제

서울학생인권조례 1년을 되돌아 보다 인권조례, 벌써 일 년? - 학생참여단 서준영

서울학생인권조례 1주년 되돌아보기: '학생인권의 봄' 을 그리며

서울시교육청 학생참여단
서준영

지난 2010년 10월, 주민발의 서명운동으로 서울시민 10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 2012년 1월 26일 공포된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어느덧 첫 돌을 맞이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공부가 본분이고 단지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아직 미성숙한 존재로 치부되어 교문에 발을 들이는 순간 인간으로서의 당연한 권리를 박탈당해야만 했던 학생들도 인간임을, 마땅히 인간으로써 누려야 할 권리가 있음을, 그런 권리의 주체임을 학생들에게 다시 확인시켜주었습니다.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은 구시대의 폭력적인 교육이 인권적인 교육으로 바뀌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학생인권조례의 첫 돌은 정말로 기쁜 일입니다. 오늘은 서울학생인권조례의 1년을 되돌아보고 '학생인권의 봄이 활짝 피어나기 위한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지 이야기해보자 합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의 1년을 되돌아보며

1. 입학 전,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에 “예비학교”라는 명목으로 강제로 수업과 자율학습을 하게 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신청권을 주었으나 예비학교 동안 수확진도를 나갔기 때문에 사실상 반강제로 하게 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2. 여름방학에도 강제로 학교에 나와 수업을 듣고 자율학습을 하게 했습니다. 예비학교 때는 명목상으로는 선택권을 줬었지만, 이번에는 선택권 없이 강제로 시켰습니다. 수확진도를 나간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겨울방학 때도 시킬 계획이라고 합니다.
3. 방과후 학교와 야간자율학습을 강제로 시행합니다. 정규수업이 끝나면 모든 학생이 방과후 학교를 들어야 하고(국/영/수 중 택2, 오후 5:30~6:30), 방과후 수업이 끝나면 밤 11시까지 야간자율학습을 해야 합니다. (오후 7:20~11:00) (간혹 선생님 허락을 받고 불참할 수는 있지만, 이는 학원 등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이유 없이 빠졌을 때는 체벌을 받습니다.)
4. 아직도 두발규제가 남아있습니다. 매일 아침, 교문 앞 정문지도에서 “두발규정”을 어긴 학생을 잡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두발규정은 학생회 대의위원회가 정한 규칙”이라면서 모두가 지켜야 한다고 하지만 그에 대한 공청회는 전혀 없었습니다.
5. 별점제가 있기는 하지만 유명무실하고, 대부분 체벌이 시행됩니다. 지각, 숙제를 안 했다거나 야간자율학습을 “깼다” 이유로 하루에도 여러 번 체벌이 시행됩니다. 그나마 있는 별점제도 “방과후 수업이나 자율학습 무단 불참 1회-별점 1점”, “두발 규정 위반-별점 2점”, 과 같은 조항이 있어 문제가 많습니다.

6. 성적 부담이 너무 큼니다. 전 과목 수준별 교육을 시행해 모든 학생을 “L1, L2, L3, L4”로 매 시험 성적에 따라 나눠서 반 편성을 다시 합니다. (그래서 “수업반(L1, L2, L3, L4)”과 “행정반(1반, 2반, 3반...)”으로 나눕니다. 심지어 L4 반은 입학할 때부터 나뉘고 다시는 섞이지 않습니다.) 특히 수학은 매달 월말평가 결과에 따라 반이 바뀝니다. 그리고 모든 학생의 등수를 게시판에 공개합니다. 또한, 영어는 한주에 한번 보는 쪽지시험 점수가 낮으면 '경고장'이 나오는데, 경고장 수가 늘면 불이익을 받습니다. (체벌, 부모님 상담 등)“

먼저 조금 어두운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위 글은 학생참여단의 학생인권조례 위반 실태조사에 사례를 남겨주신 학생의 글입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됐음에도 여전히 학생인권조례를 따르지 않는 학교는 비단 위 사례의 학교뿐만이 아닙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는 2012년 한 해 동안 난항을 겪었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었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두발이 규제되는 등 학생인권조례의 시행으로 이미 금지된 학생인권 침해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조례에 따라 일선 학교의 학칙도 학교구성원들이 민주적으로 개정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학교들이 상당히 많았음이 학생참여단의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학교 현장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의 안착은 더뎠습니다. 설문 응답자의 98%가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교육받지 못하였다고 답하였고, 응답자의 60% 가까이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면 서울학생인권조례 공포 이후 언론 보도가 쏟아졌지만 정작 학교 안에서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안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각 학교에서는 조례의 시행에 따라 모든 학생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해 학칙을 민주적으로 개정해야 하지만¹⁾ 여전히 구시대적인 낡은 인권침해적인 학칙은 계속해서 쓰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학생인권침해의 대명사인 두발규제입니다. 응답자의 44%가 아직도 학교에서 두발규제가 실시되고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영향으로 두발규제가 없어지거나 완화되었다고 답한 응답자나 학교 사례도 일부 있었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일선 학교들은 학칙에 두발규제에 관한 사항을 남겨 규제와 처벌의 근거를 남겨둔 셈입니다.²⁾

이 외에도 2010년 서울시교육청에서 금지한 체벌이나 전자기기 일괄 규제, 용의복장 규제, 강제 보충학습, 개인정보 공개 등의 인권침해 사례가 많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체벌은 많이 사라지지 않았으며 반문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여전히 간접체벌은 가능하다는 등의 근거를 앞세워 체벌을 하는 교사들이 많은 현실입니다.

아직도 학생의 하루는 아침부터 교문지도를 받고, 수업시간에는 체벌에, 학교가 끝나고 나면 다시 보충수업과 야자에 시달립니다.

이처럼 서울학생인권조례의 현장 안착은 1주년인 지금까지도 좀 더딘 상황입니다. 그러나 서울학생인권조례로 인한 긍정적인 변화도 있습니다. 먼저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서울은 물론이고 다

1)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제19조(학칙 등 학교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2) 2012. 10. 30 SBS “서울 중고교 88%가 학칙에 두발제한”

른 지역의 교육주체들이 학생인권에 대해 고민과 관심을 가지고 좀 더 활발하게 논의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학교의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이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지금까지 가려져 왔던 학생인권 문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공론화가 되었다는 점에서 학생인권 보장의 초석은 마련되었고, 비록 지금은 걸음마 단계지만 학생인권조례로 인한 학교의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주년이 우리에게 남겨준 것들: 서울학생인권조례 안착을 위한 과제

여전히 학교에서는 인권침해가 빈번하기에 서울학생인권조례의 지난 1년은 학생인권조례의 현장 안착을 위한 과제를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조례는 이미 제정되었지만, 현장에서 그것을 시행하기 위한 노력과 고민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당연히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다고 해서 학교현장이 곧바로 바뀌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학생인권이 학교 안에서 꽃피우기 위해 학생인권조례의 안착을 위한 여러 제도적인 뒷받침과 노력이 더 필요합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가 그저 문자로만 남지 않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를 좀 더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참여의 활성화

제일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것은 학생참여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학생인권조례의 당사자는 학생입니다. 학생인권조례의 안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생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태조사 자료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학교규칙과 같은 학교 운영에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이 많습니다. 학생참여 활성화는 민주적인 학교의 기본입니다.

우선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회와 같은 학생의 자치활동을 최대한 적극 보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학생회의 자치활동이 자율성을 인정받고 지원을 보장받을 때, 학생들이 민주적으로 학교를 바꿀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어 민주적이고 인권적인 학교 분위기가 조성될 것입니다.

또한 학교규칙 제·개정 시 학생회 같은 대의기구는 물론이고 모든 학생의 의견을 공청회나 설문조사 같은 방식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교육청도 더 적극적으로 학생들의 목소리를 잘 듣고 학생인권 관련 정책에 반영해야 합니다.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해 만들어진 학생자문기구인 학생참여단의 의견을 적극 듣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교육청이 학생인권에 관련한 지침을 내릴 때 학생참여단의 의견을 잘 듣지 않는 미흡한 면이 있었습니다. 저희 학생참여단도 학생들의 목소리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제 37조 5항에 적혀있는 대로 지역교육지원청별로 학생참여단을 두고 활성화한다면 지역별로 좀 더 다양하고 많은 학생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생인권조례에 명시된 학생참여단의 권한

1. 교육감의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2.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의 개정에 관한 의견 제시
3. 학생인권실태조사에 관한 의견 제시
4. 학생인권실천계획에 관한 의견 제시
5. 학생인권옹호관의 조사 및 그 권고에 대한 의견 제시
6.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의 날」 자치행사 주관
7. 학교규칙을 포함한 제반 학교규율에 대한 의견 제시
8. 그 밖의 학생인권 증진 및 학생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지속적인 학생인권 실태조사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제 45조에는 “교육감은 학생인권 관련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생인권종합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생참여단이 실시한 실태조사는 좀 더 많은 학교를 조사하지 못하는 표집조사의 한계가 있습니다. 표집조사보다는 되도록 전수조사가 더 좋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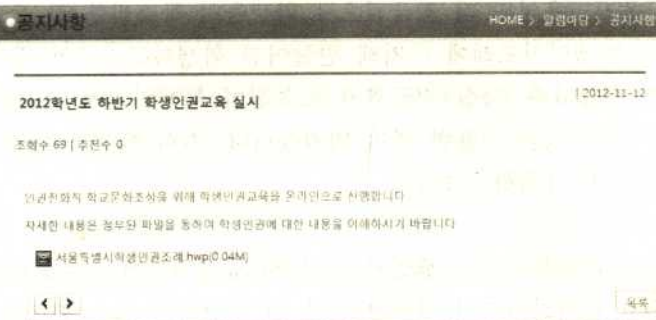
지속적인 학생인권 실태조사를 통해 각 학교의 학생인권 상황을 점검하고 학생인권종합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인권교육

위의 학생참여단의 학생인권조례 위반 실태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교육 받지 못한 학생이 많습니다. 지금의 학교는 인권교육을 실시하지도 않을뿐더러 인권을 배울 수도 없습니다.

학교에서 인권교육을 받는다고 치더라도 형식적인 인권교육이 대부분입니다. 심지어 어느 학교에서는 학교 홈페이지에 학생인권조례 전문을 실어놓고 학생인권교육을 온라인으로 진행했다고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형식적이고 수동적인 인권교육은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정말로 학생뿐이 아닌 학교의 모든 구성원들이 인권을 배우고 느낄 수 있는 내실 있는 인권교육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몇 달에 한번 의례적으로 실시하는 인권교육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인권친화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도 또한 인권교육입니다.



학생인권옹호관 도입

학생들이 학교에서 겪는 인권침해를 효과적으로 빨리 구제하기 위해서라도 학생인권옹호관의 도입이 시급합니다. 세계에 많은 나라들은 시민들의 인권 증진에 관한 법을 실질적으로 실행에 옮기기 위해 옹호관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일단 학생인권교육센터에 인권침해에 대해 상담하고 구제가 가능하지만, 실질적인 학생인권 보장을 위해서는 학생인권옹호관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들이 인권침해를 좀 더 쉽게 진정할 수 있는 창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학생인권의 봄’ 을 그리며: 마치는 말

이제 일 년, 아직 서울학생인권조례는 걸음마 단계이고 출기만 한 겨울입니다. 그러나 학생인권의 보장은 이제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이제 인권침해적인 학교는 구시대의 낡은 유물로 사라져야 합니다.

서울과 경기, 광주에 이어 강원과 충북, 경남 같은 다른 지역에도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쯤 되면 학생인권은 시대의 대세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여러 혁신학교의 인권친화적인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곧 서울도 봄이 찾아오고 학생인권의 꽃이 온 학교에 활짝 필 것입니다. 그런 ‘학생인권의 봄’ 을 위해 학생참여단도 서울학생인권조례의 안착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위반 실태조사 결과발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참여단

1. 실태조사 취지

2012년 1월 26일, 많은 시민들의 열망 속에 주민발의를 통해 만들어진 서울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되었습니다. 그동안 학생들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아직 배움이 우선이라는 이유로 인권을 억압받았습니다. 아 니, 아예 인권을 박탈당했다고 말해도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 학생도 인간임을, 엄연히 인권을 보장받 는 우리 사회의 일원임을 다시 재확인시켜준 것이 학생인권조례입니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를 시작으로, 인권의 봄바람이 불 것만 같았 던 서울 학교에도 끝내 인권의 봄바람은 불지 않았습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되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과학기술부의 시행령 개정 등을 이유로 들어 학생인권조례를 지키려 하지 않는 학교가 너무 나도 많았습니다. 2012년 한 해 동안 학교에서는 두발규제와 체벌을 비롯한 각종 폭력과 차별이 빈번하게 그리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초중등교육법에 의해서도, 헌법에 의해서도, 학생도 인간이라는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에 의해서도 보장받아 야 할 학생인권입니다. 학생인권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학생인권조례 또한 실효되지 않고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환기시키기 위해 서울시내 345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위반하고 있는 학교가 있 는지 실태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 실태조사 방법

서울지역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2년 10월 15일~11월 15일 동안 온라인 웹페이지 (<http://shcd.er.ro>) 와 더불어 오프라인 설문지 (캠페인)을 통해 설문을 받았습니다.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례로 본 것들은 **염색, 파마 규제를 비롯한 강제적인 두발 규제, 휴대폰 소지 혹은 사 용 무조건 금지, 학칙 개정 시 모든 학생들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 경우, 욕설, 기합, 폭력 등의 폭력을 가 하는 경우, 종교자유를 침해하는 경우, 학생회, 동아리 같은 학생자치활동을 막는 경우**입니다. 이 외에도 다 른 인권침해 사례가 있다면 그것 또한 조사하였습니다.

*학생인권침해 사례의 경우 복수 응답을 받았습니다.

3. 실태조사 결과

1) 학교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을 교육 받았는지에 대한 여부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을 알리고 교육하는 것은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학생은 8명(2%)**밖에 되지 않았으며, 나머지 **336명(98%)은 교육받지 못하였다고** 답하였습니다. 응답하지 않은 학생은 1명입니다.

2) 현 시행되고 있는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알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

전혀 모른다고 답한 학생은 72명, **들은 적은 있지만 잘 모른다고** 답한 학생은 133명, **알고 있다고** 답한 학생은 92명, **매우 잘 알고 있다고** 답한 학생은 4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학생이 **60%** 가까이 되는 것입니다.

3) 학생인권 침해 사례

학교 안에서 직접적으로 학생인권을 침해받는 사례는 **염색과 파마와 머리카락 길이 규제를 비롯한 두발규제가 152건(44%)**으로 제일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욕설, 기합, 협박, 체벌을 비롯한 폭력이 82건(24%)**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또한 **엑세서리, 화장, 렌즈, 양말, 손톱 같은 용모 규제가 82건(24%)**이었고, 그 다음으로 **휴대폰 일괄 걷기, 압수 같은 전자기기 규제가 73건(21%)**, **사복 외투 또는 담요 규제가 39건(11%)**, 성적 등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사례가 15건(4%)**, 성적(점수)로 **차별하는 경우가 13건(3%)**, **소지품 검사가 8건(2%)**, **예배를 강요하는 등 종교자유를 침해하는 사례가 6건(2%)**, **자치활동을 방해하는 경우가 7건(2%)**으로 나타났습니다.

4. 다른 학생인권 침해 사례들

1) "선생님들이 특하면 벌점 준다고 협박하고 수업시간에 문제 질문해서 모르면 벌점을 주고 두발자유가 아니고 선생님들 몇몇이 학생들을 때리고 혼냅니다. 그리고 추워서 교복위에 사복을 입어도 옷을 뺏고 벌점을 줍니다. 그리고 어떤 선생님은 크리스마스 썰 신청해서 돈 주고 사는 것을 강제로 몇몇 학생한테 주고 내일까지 돈 가져와라. 그리고 방과후학습도 강제로 시켜서 하기 싫다고 말하거나 개인사정으로 인해 방과후를 못한다 말을 해도 그건 알바아니라면서 때리고 혼을 냅니다. 정말로 학생인권을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무효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학생부장한테 얘기했더니 학부모면담요청으로 제 부모님을 부르더니 그 앞에서 너무나도 모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또 학부모 면담에서 있지도 않는 얘기를 만들어내고 저한테 너무 불리하게 얘기를 해서 제가 따지려고 했더니 ""너 한마디만 더해! 그럼 면담이고 뭐고 나가버릴거야""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최소한의 변론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할 말은 해야겠어서 따졌더니 ""아버님 보셨죠? 애가 이런 아이예요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하고 나가버리더군요. 그 면담하려고 아빠는 휴가까지 냈는데 면담갈지도 않은 면담을 5분 동안 하고 결국 저를 토라이로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그 후에도 제 주변사람들에게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등 요즘 내가 뭐하고 지내냐는 등 캐묻고 다니기도 했어요.

1학기 까지만 해도 없었던 두발길이 규제가 2학기 들어 갑자기 생겼습니다. 교칙수정과정에서 일반학생의 참여가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학교는 벌점을 30점 받으면 사회봉사인데 벌점이 쌓이지 않아도 바로 사회봉사에 처하게 할 수 있는 몇몇 조항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 사회봉사도 받고 사회봉사를 했다는 이유로 벌점 30점을 한방에 줘요. 이거 이중처벌(?)이라 생각합니다.

남교사가 학생이 지각을 했다는 이유로 남학생의 성기를 만진 적이 있습니다.

단체로 흡연여부검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학교폭력에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때렸을 때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를 때릴 경우 둘 다 징계위원회에 보냅니다. 정당방위의 행위에도 벌점을 주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셀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3) "교내 방송으로 급식비 지원 명단을 불렀당 ππ"

4) "염색을 규제하고 있고 파마를 따로 규제하진 않으나 선생님께서 머리 지적을 하심. 징계사례는 항상 노출하고 있음. 수업시간의 핸드폰 소지를 금지하여 책상에 넣어놓고 있어도 알람이 울린다거나 진동이 울리면 빼앗아감"

5) "징계사례가 노출되는 경우 존재: 학교 bulletin board에 징계내역, 징계 사유, 전공과, 성, 학년, 반을 표기한 종이를 붙여놓음. 학생들의 정당정치활동 암묵적인 금지 및 반대"

6) "동아리별 교사 개인적인 선호도로 인한 차별 ex) 지원금 격차, 특정 활동 참여 불가"

7) "제가 교실 문을 나서는데 뒤에서 여자선생님이 따라오시면서 저에게 몸이 변화하고 있다면서 (몸이 뚱뚱해지고 있다는 뜻) 운동을 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저를 생각해서 그냥 하시는 말씀이겠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 그 선생님 수업에 제가 발표할 게 있어서 칠판 앞으로 나오는데 선생님이 애들한테 "어제 이 아이를 뒤에서 봤는데, 몸이 변화하고 있는 것 같다. 살을 빼라." 라고 애들이 다 저를 쳐다보는 앞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 그때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이것도 인권침해 아닌가요?"

8) "담임선생님에게 한정되는 사항이지만 저희 담임선생님은 종례시간에 애들 다 있는데 '급식비 지원받는 사람?', '우리 반에 기초생활수급자 있나?' 이렇게 민감한 사항들을 막 그냥 물어보세요. ππ 사실 말하기 싫은 아이들도 있을 텐데 이렇게 막 물어보시고 자리배치도 공부 잘하는 애들은 앞에 앉히고 공부 못하는 애들은 다 뒤로 보내고 맘대로 자리 배치하시고 선행상, 봉사상 같은 것도 아이들 상의하고 정해야 되는데 공부 잘하는 애들 불러다가 너가 받으라면서 사례 써오라고 하십니다.."

9) "이름표는 교내, 외서 항상 교복 뒷주머니 중앙으로부터 1cm상단에 패용한다.

머리 무스, 젤, 염색, 파마, 스프레이, 코팅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교복은 기본 형태를 변형시켜서는 안 된다.(치마길이는 무릎은 덮어야 한다.)

살구색, 커피색 스타킹에는 흰 커버양말을 반드시 신어야 한다.

피부보호를 위한 투명로션과 스킨 이외의 화장은 금한다.

손톱의 투명 매니큐어도 금지한다.(손톱 강화제도 금지한다.)

눈썹을 정리하거나 손톱을 길러서도 안 된다.

스카프, 목걸이, 귀걸이, 반지, 브로치, 팔찌, 염주, 목주용 반지 등은 금지한다.

등교 시 즉시 전원을 끄고 학급별로 담임선생님이 휴대폰가방(학교에서 제공)에 수합하여 교무실 내 개인사물함에 보관하고 종례 시 담임선생님이 배부한다.(교내에서는 전원을 항상 끄고 교문 밖에서만 전원을 켤 수 있다.)

2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린다.

학칙을 바꿀 때 학생 소수의 인원(선도부)만 참여하여 바꾼다.

아무리 공부를 하는 학생이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인권을 침해하면서까지 학생을 학생이란 틀에 가두고 싶어 하는 모르겠다.

고3은 한참 공부에 신경써야 할 때 이런 규정 때문에 학교생활이 힘들었다고 한다.

아직 우리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거의 지켜주지 않는 것 같다.

빨리 이 사항들이 고쳐져 꼭 막힌 학교생활이 아닌 자유로운 학교생활을 보내고 싶다."

10) "1. 머리 길이에겐 제한이 없으나 (남학생의 경우 있음) 파마, 염색은 물론 머리가 어깨에 닿는 여학생의 경우 머리를 묶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선생님들이 지나다니실 때 마다 지적하시고, 몇몇 부지런한 선생님께서는 일일이 벌점까지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머리가 긴 여학생인 경우 선생님을 볼 때마다 급하게 머리를 묶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2. 저희는 매일 아침 조회시간에 핸드폰을 걷습니다. 핸드폰을 소유한 학생은 벌점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7교시가 끝난 후 종례시간에 핸드폰을 돌려받고 있습니다.

3. 이게 인권 침해 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는 기독교학교입니다. 그래서 수요일마다 저희는 예배시간이 있으며, 일주일에 2시간 일년에 총 60시간 종교수업을 이수하게 되어있습니다. 종교수업을 받지 않으면 다음 학년으로 진급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세례를 받지 않으면 저희 학교 내에 인성장이라는 상장을 받기 힘들어집니다. 종교시간 마다 기독교를 믿지 않는 저희들도 성경을 배우며, 기도를 드립니다. 종교시간에 들어오시는 목사님께서 다른 종교를 무시하는 말을 자주 하십니다.

4. 징계사항은 학생과 교무실 앞 게시판에 공개적으로 붙여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 "학습부진이라며 많은 아이들 앞에서 선생님이 먼저 노에 취급하여 아이가 많이 의욕을 잃었고 엄마인 저는 분쟁위원회까지 했습니다. 두루두루 억울한 것이 많았지만, 도와주시며 해결해주는 분들이 있어서 이제는 나아지겠지 하며 두루뭉술하게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3개월가량을 선생님의 횡포에 쉬었지만, 아이의 성적은 그 이후로는 더 떨어졌습니다. 공부를 시킬라치면 먼저 마음상태를 보아야하고, 가끔 이어지는 선생님의 다른 형태의 죄는 듯한 괴롭힘. 초등2학년이 무슨 입시학원도 아니고, 점수위주로만 아이를 평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가 학교에 오늘 부터는 선생님의 수업거부를 합니다. 어찌지요. 남기지 말라고 했는데도 아이들 다 듣는 앞에서 오늘 남으라고 크게 얘기해 많이 창피했다고 합니다. 아님 급식시간에 혼자 남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십니다. 아이가 남는 것에 공포를 얼마나 느끼는데도 여전히 공부공부 하시면 이제는 공부해야지 하시지만, 우리아이가 느끼는 것은 여전히 선생님에 대한 믿음이 소멸되어가고, 아침에 학교가면서도 선생님이 또 남길게 분명하고, 여전히 무슨 일 있으면 쓰리고하고, 다시 쓰리고 하고 하시겠지 합니다. 분명히 아이가 많이 상처받고 있으니 사소한 거라도 엄마와 상의해 주시기를 배려했지만, 그렇지 않네요. 학습습관, 기본생활습관 잡아주신다면 교육목적으로 다뤄주신 결과가 학교등교거부, 선생님에 대한 공포심뿐입니다. 묻고 싶습니다. 성적이 부진하면 무조건 창피주고, 남깁니까? 그래서 뭐가 고쳐졌습니까..."

12) "핸드폰 및 전자기기 소지 금지.(4시~6시반 만 사용 및 소지 가능)

일부 선생님의 체벌.

많은 학생들이 원하는 일(매점 설치, 아침 식사시간 제한 완화, 교복 규정 완화, 기숙사 상벌점제 완화 등)도 기숙사운영부와생활지도부, 교장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거부

휴식권을 제대로 보장받고 있지 않다고 생각함. (야간자율학습 11시반 까지, 그 후 기숙사 방, 기숙사 내 자습실에 있지 않으면 벌점, 기숙사 내 음식물반입 금지, 6시 반 기상, 4시 일과 끝, 야간자율학습 시작 6시 반.)"

13) "두발 규제가 너무 심해요. 머리는 긴 거 같을 땐 줄자로 직접 제서 검사를 하기도 하고, 자연갈색이라고 해도 염색 같다고 검은색으로 하랄 때도 있어요.

또 정규검사라고 하면서 선도부 애들이 전교에 다 들어가서 치마길어도 조금만 짧아도 바로 걸리고(치마길이는 무릎 중간) 제 시간 안에 안 늘려오면 벌점만 계속 나가요, 만약 치맛단을 다 늘려서 아예 없을 경우에는 고3이라고 해도 치마 압수하고 새로 하나 사라고 까지 하네요.

핸드폰은 아침에 내라고 하는데 만약 안내서 그냥 쓰는 것도 아니고 소지한 것만 걸려도 바로 1달 동안 압

수예요.

그리고 학기 초에는 종교과목이랑 철학과목 중에 하나를 선택하했는데 철학을 선택한 애들은 나중에 한명씩 따로 불러서 왜 철학을 선택했나, 철학 말고 종교할 생각이 없나?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하다가 그래도 철학을 하겠다고 한 애들한테는 아직 철학책이랑 선생님은 있지 않다, 만약 할 거라면 방과후에 수업을 들으라는 식으로 말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종교로 무조건 듣게 하려고 하는거면 왜 종교, 철학 둘 중 하나를 고르라고 했냐니까 고르는 가정통신문에 '2학년은 모두 종교를 선택했습니다' 이런 글귀가 있었다고 그냥 종교과목 하라고 밀어붙였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는 철학 과목이 없죠.

1교시에 예배시간이 있는데 승의는 기독교 신자들도 많긴 하지만 그보다 다른 종교나 무교가 많은데 선생님께 무교인 애가 무교인데 꼭 예배시간을 가야하냐고 그냥 그 시간에 자습을 하면 안 되는거냐고 했다가 욕만 먹고 억지로 계속 갔대요.

또 학교 규정을 바꿀 때 학생회랑 몇몇 선생님들이 참여하시기는 하는데 학생이 정말 필요해서 제시한 규정이라고 하더라도 선생님들이 이걸 싫다 하면 바로 묵살되니까요. 또 학생회가 아닌 사람들은 규정에 대해 의견을 내지도 못할뿐더러 규정이 바뀌고 나면 각종 계단 쪽 게시판에 붙게 되는데 그쪽으로 안다니는 사람은 보지를 못하니까 괜히 규정에 걸리는 거죠.

또, 징계를 먹을 때의 벌점이 최소 20점부터 교내봉사, 40점 교외봉사 뒤에 80점은 퇴학인데요, 저희학교는 타이틀 매고 오지 않은 거를 제외하고 딱것에는 벌점이 모두 4점이라서 5개만 걸리더라도 바로 교내봉사 징계라인이 되고 말아요."

14) "매일 아침마다 교문 바로 앞에서 행해지는 사헌부의 두발, 복장 규제. 학칙에 복장에 대한 사항이 기재되어있다고는 하나 그 교칙이 너무나도 엄격하다. 한 예로 '동복 착용 시 보온을 위해 검정 스타킹 착용, 춘추복 착용 시에는 살색 스타킹 착용. 양말 색은 흰색 등 굳이 제한하지 않아도 될 부분에 대한 교칙들이 많다. 두발에 대해서 있는 교칙들과 학생 지도 시 교사의 행동에도 문제점이 많다. 학생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협박조로 얘기하기도 하고 가끔 있는 일이지만 학생의 가방을 걷어차는 시늉을 한 것을 보았다. 학칙에 어긋나는 사항에 대한 지도라고는 하나 학생을 인격적 존재로 대하지 않는 태도가 보기 좋지 않다.

핸드폰 소지에 관련하여 학기 초에 교감이 학생들의 핸드폰 소지를 저지하지 말라는 방송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급별로 담임재량에 따라 핸드폰 수거가 이루어지고 있다.

교과부 시행령이 내려져 9월 학칙 전면개정이 있을 시에도 학칙 개정에 전교생이 참여하지 못했으며 (개정을 위한 회의에 참여한 학생들은 각 학급의 대표와 학생회 정도였으며 그 나머지 학생들에게는 서면을 통한 의견작성기회 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또한 학부모 의견을 묻기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가정통신문에 의견을 적어 제출했을 때 생지부에서 학칙개정 관련 업무주도를 하던 선생님이 개인의 의견으로 치부하고 무시하려는 행태를 목격했다.(그 서면은 제가 작성했고, 마침 생지부에 분실물 관련 공지에 승인을 받으려고 내려갔다 목격했습니다.)"

15) 방학후 새 학기가 되면 염색, 파마 등을 잡고 가디건이 없으며 마이도 따뜻하지 않아 체육시간 이외의 다른 시간에 체육복을 입고 있으면 잡고 외부의 외투를 입으면 벌점입니다 또한 작년 늦은 여름부터 생활복이 도입되었는데 교사의견이 많은 부분을 생활복으로 채택하였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상점은 벌점 많은 학생들이 벌점을 깎기 위해 어떤 선생님께 부탁해 상점을 받고 있습니다.

16) "1. 입학 전,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에 ""예비학교""라는 명목으로 강제로 수업과 자율학습을 하게 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신청권을 주었으나 예비학교 동안 수학진도를 나갔기 때문에 사실상 반강제로 하게 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2. 여름방학에도 강제로 학교에 나와 수업을 듣고 자율학습을 하게 했습니다. 예비학교 때는 명목상로나마 선택권을 줬었지만, 이번에는 선택권 없이 강제로 시켰습니다. 수학진도를 나간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겨울방학 때도 시킬 계획이라고 합니다.

3. 방과후 학교와 야간자율학습을 강제로 시행합니다. 정규수업이 끝나면 모든 학생이 방과후 학교를 들어야 하고(국/영/수 중 택2, 오후 5:30~6:30), 방과후 수업이 끝나면 밤 11시까지 야간자율학습을 해야 합니다. (오후 7:20~11:00) (간혹 선생님 허락을 받고 불참할 수는 있지만, 이는 학원 등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이유 없이 빠졌을 때는 체벌을 받습니다.)

4. 아직도 두발규제가 남아있습니다. 매일 아침, 교문 앞 정문지도에서 ""두발규정""을 어긴 학생을 잡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두발규정은 학생회 대의원회가 정한 규칙""이라면서 모두가 지켜야 한다고 하지만 그에 대한 공청회는 전혀 없었습니다.

5. 벌점제가 있기는 하지만 유명무실하고, 대부분 체벌이 시행됩니다. 지각, 숙제를 안 했다가거나 야간자율학습을 ""뺐다는"" 이유로 하루에도 여러 번 체벌이 시행됩니다. 그나마 있는 벌점제도 ""방과후 수업이나 자율학습 무단 불참 1회-벌점 1점"", ""두발 규정 위반-벌점 2점"", 과 같은 조항이 있어 문제가 많습니다.

6. 성적 부담이 너무 큼니다. 전 과목 수준별 교육을 시행해 모든 학생을 ""L1, L2, L3, L4""로 매 시험 성적에 따라 나뉘어서 반 편성을 다시 합니다. (그래서 ""수업반(L1, L2, L3, L4)""과 ""행정반(1반, 2반, 3반...)""으로 나뉩니다. 심지어 L4 반은 입학할 때부터 나뉘고 다시는 섞이지 않습니다.) 특히 수학은 매달 월말평가 결과에 따라 반이 바뀝니다.

그리고 모든 학생의 등수를 게시판에 공개합니다. 또한, 영어는 한주에 한번 보는 쪽지시험 점수가 낮으면 '경고장'이 나오는데, 경고장 수가 늘면 불이익을 받습니다. (체벌, 부모님 상담 등)"

17) "두발규제와 관련해서 학칙으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학칙이 인권 조례보다 우선이라는 이유로 파마와 염색을 금지하는 규정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칙 수정 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전제조건을 담고 있다고 들었는데, 학생들의 건의사항이 있을 경우 서면이나 이메일로 교무실로 보내달라고 한 바는 있지만 이러한 건의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임원 수련회에서 학칙 관련해서 회의를 하겠다고 하였지만 다른 레크레이션 스케줄 일정이 늦춰지는 등의 이유를 대면서 학칙과 관련해 이야기 할 기회가 사실상 없었고 거의 생활 지도부 선생님과 전교회장단의 일방적인 통보 형식으로 회의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인권 조례 이후로 염색을 한 적이 있는데, 학칙 개정 이후 두발 단속에 걸려 현재는 흑색 머리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

18) 저희 학교는 매주 수요일 금요일 마다 선도부가 있습니다. 그들은 아침마다 이름표와 신발 등을 검사하며 만약 이름표가 없고 신발이 슬리퍼이면 종이에 학번과 이름을 적어서 담임선생님께 그 종이를 보냅니다. 그리고 담임선생님은 그 종이를 받고 학생에게 벌칙을 줍니다. 또한 따로 아침마다 선도부를 교실로 빼 귀걸이와 치마길이 염색 파마를 관여하고 귀걸이는 뺏아서 돌려주지도 않습니다. 또한 중학교에 홍보를 가는 것도 선생님이 좋아하는 학생들을 뽑아 그들만 학교 홍보를 갑니다. 선생님들이 주로 좋아하는 학생들은 공부를 잘하며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는 그런 학생들만 뽑아서 데리고 갑니다. 또한 따로 아이들을 뽑아 그 아이들에게 학생회를 신청하라고 반강제적으로 학생에게 시킵니다. 또 이 동아리(예를 들어 댄스 동아리)에 소속 되어 있는 학생들에게는 학생회가 못되거나 학생회장이 못되는 그런 우연을 가장한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한 수업시간에 공부를 하지 않으면 너는 희망이 없다는 등 커서 뭐가 될래? 라는 모욕적인 일들이 있기도 하고 처지가 어려운 학생들에게 억지로 취업을 하라고 강요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학생 인권조례는 저희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 것입니까?

19) "체육시간 중 엎드려뺨쳐

아침에 교문에 스쿨폴리스가 두발과 복장단속 후 벌점 줌
이름을 공개하고 싶지 않은데 이름표를 안 달면 벌점
선생은 외투에 엄색에 다하는데 학생이하면 벌점
휴대폰 강제압수 거부하면 압수기간 추가
여학생이 불편한 조끼대신 남자가 입을 까만 니트조끼를 입었다고 스쿨폴리스(학주)가 강제압수
여학생이 옷 갈아입는데 학주가 맘대로 들어옴 여자화장실도
전교생을 상대로 복장두발 단속을 함 교도소 같음"

20) "1. 교과부에서 학교폭력전수조사를 할 때 교장선생님의 지시로 설문조사를 하지 않는 학생은 집에 못
가고 학교에서 하라고 했음 하지만 저는 이런 설문조사는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고 판
단해 설문조사를 거부했으나 결국 하게 됨. (그냥 이런 침해 사례가 있었구나 하고 넘겨주세요..ㅠ)
2. 조례가 시행된 뒤 학교규칙을 바꿀 때, 저희학교는 법제관지정(?)학교여서 법제관인 학생들이 모여서 토
론하고 규칙을 바꿨는데 법제관학생을 고르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1학기 회장에게 임명함 물론 대표성이
있긴 하지만 법제관학생은 반 아이들에게 의견수렴과정은 한 번도 없었음. 그리고 토론 같은 거 할 때
일반학생들에게 공지 같은 건 없이 법제관학생들로만 하게 됨. 그리고 법제관학생들이 회장들로 구성된지
라 보수성향이 강함 "

1부 발제

학생인권조례 1년 평가와 향후 전망과 과제-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 서울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 위원)

1. 서울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경과와 의의

1. 1) 학생인권조례 경과

- 2010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서명 추진(6개월)
- 2011.08.03. 법제심의회, 법정 인원 충족(97,702명)으로 청구수리 결정
- 2011.09.30. 주민발의안 시의회에 이송
- 2011.10.13. 학생생활지도정책자문위원회, 조례(안) 서울교육청에 제출
- 2011.11.19. 서울시의회 교육위·본회의 통과
- 2012.1. 이대영 교육감 권한대행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
- 2012.1. 광노현 교육감 학생인권조례 재의요구 철회
- 2012.1.26.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공포·시행
- 2012.1.26. 교육과학기술부, 법원에 학생인권조례 공포 무효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 2012.1.27. 서울교육청이 학교에 학생인권조례 공포·시행에 따른 학생생활지도 안내 배포
- 2012.1.30. 교육과학기술부가 서울교육청에 대해 학생인권조례 관련 학칙개정지시에 대한 시정명령
- 2012.2.3. 서울교육청이 학교에 학생인권조례 시행에 따른 안내 공문 시행³⁾
- 2012.2.15. 교육과학기술부가 서울교육청에 대해 학생인권조례 관련 학칙개정 지시에 대한 정지 통보
- 2012.2.20. 서울교육청이 학교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 「학생인권조례 관련 학칙개정 지시에 대한 정지 통보」 알림
- 2012.2.29 학생인권조례 관련 학칙개정 지시에 대한 정지 통보에 대해 대법원에 소 제기
- 2012.4.20.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시행
- 2012.5.4. 교육과학기술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사항 및 학교규칙 정비 안내」
- 2012.5.4. 교육과학기술부 서울·경기·광주교육청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학생인권조례 일부 조항 실효 알림
- 2012.5.8. 서울·경기·광주 교육감 공동 성명⁴⁾
- 2012.5.24. 서울교육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사항 및 학교규칙 정비 안내」 시

3) "조례가 공포·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 규정된 학생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학칙 제개정과 관계없이 효력이 있으므로 조례 제정의 취지에 맞게 학생 생활지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시행령에 따른 교과부의 조례 일부조항 실효 주장은 합리적인 법적 근거가 없는 것임. 시행령은 학교규칙의 제·개정 절차와 기재사항을 형식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학생인권조례는 그 내용의 한계를 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서로 배치되는 내용이 아니다"

행 (서울학생인권조례에 취지에 맞도록 함)⁵⁾

- 2012.6.9 서울시의회 「서울시교육감 소속 학생인권옹호관 운영 조례」안 의결
- 2012.7. 교육과학기술부 학생인권옹호관 조례 재의요구
- 2012.8.27. 서울시의회 「서울시교육감 소속 학생인권옹호관 운영 조례」안 부결
- 2012.10.08. 교육과학기술부, 학칙 제·개정 추진 조사 공문 시행

2.

3. 2)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의와 과제

- 헌법과 법률, 국제인권법이 보장하는 학생의 기본적 인권을 학생인권조례로 재확인하고 구체화했음
- 주민발의를 통해 아래로부터 만들어 가고 지방자치의회의 민주적 절차를 통해 의결함으로써 학생인권에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규범력을 부여함
- 학생인권을 시대의 화두로 부상시키고, 학생인권의 중요성을 시민사회에 각인시키는데 성공함.
- 조례 제정과정에서 차별금지 사유 등 몇 가지 사안이 첨예한 문제로 떠올랐으나, 인권-시민사회의 진영의 노력으로 최종적으로는 원칙적인 입장이 관철되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음
- 하지만 제정 이후의 시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상황임. 조례에서 규정한 기본적인 제도가 하루 속히 완비되어야 하고, 조례의 구체적 내용이 학교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되기 위한 실효성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함.

2. 학생인권조례 시행과정 평가

4. 1) 교과부와의 충돌

- 위의 경과과정 연혁에도 나오듯이, 광노현 서울교육감의 신상 문제로 인해 조례의 시행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교과부는 학생인권조례 공포 무효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개별 학교에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시키는 공문 시행 등을 통해 학생인권조례의 시행을 저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조치를 취했음.
- 이 과정에서 학교현장에서는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을 둘러싸고 혼란이 있었고, 이것은 학교현장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실질적으로 정착되는데 큰 장애요인으로 작동함.

5. 2) 교육청의 집행의지 부족

- 교과부와의 힘겨루기로 인해 학교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청 역시 학생인권조례의 시행을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 인해 혼란이 가중됨.
- 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관련 공문을 시행하는 등의 형식적인 조치를 취하긴 했으나, 교육부도 지속적으로 공문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혼란을 정리하고 학생인권조례가 학교현장에서 뿌리내리게 하기 위한 확고한 의지를 보였다고 하기는 어려움.

5) “시행령에 따라 학교규칙을 제·개정할 때, 학생의 두발에 대해서는 서울학생인권조례(제12조-개성을 실현할 권리)의 내용과 취지에 어긋나지 않아야 하며, 기타 복장 등 용모에 관한 사항,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에 관한 사항 등도 서울학생인권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학생을 비롯한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개정하여야 함.”

◦ 결과적으로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무력화되었고 학생인권조례에 명백히 위배되는 학칙 제·개정을 용인하는 분위기가 확산되었으나 교육청은 사실상 무력한 태도를 보였음.

◦ 특히 학생인권조례 시행 실태조사와 학생인권조례 위반 사례에 대한 후속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는 등의 문제로 인해 사실상 학생인권조례가 방치되는 사태에 이르게 됨

6. 3) 학생인권조례 홍보 및 교육의 문제

-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사회 전반의 부정적 인식 사례
 - 학생인권조례에는 ‘체벌금지’, ‘두발규제금지’ 등 부정적, 금지의 규정들로 구성되어 있음.
 - 학생인권조례에는 교권을 무력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음
 - 학생인권조례가 학교폭력, 교권실추의 주범임
 - 학생인권조례는 임신과 동성애를 조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음

◦ 교육청에서는 ‘학생인권조례 교사 안내자료’, ‘학생인권조례 학생용 안내자료’, ‘학생인권조례 OX퀴즈, 도전골든벨’, ‘서울학생인권조례 해설서’ 등을 제작하여 배포하기도 했지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학교현장에서 소통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

◦ 조례에는 학교현장에서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을 담은 인권교육⁶⁾을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충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홍보/교육의 부족으로 인해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극복하지 못했고, 학생인권조례가 담고 있는 휴식권, 문화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소수자학생인권 등 인권의 가치가 담겨 있는 긍정과 배려의 규범들은 거의 부각되지 못함.

◦ 특히 학교폭력 문제가 화두가 된 상황에서 학생인권의 보장이 마치 학교폭력문제와 배치되고 심지어 이를 조장하는 책임을 학생인권조례에게 전가하는 담론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 학교가 안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마치 학생인권조례의 탓인 것처럼 여겨지기도 했음.

7. 4) 학생인권교육센터와 학생인권옹호관

◦ 조례에 규정된 교육청 내 학생인권교육센터와 학생인권옹호관(학생인권교육센터장)은 교육청 내 학생인권 정책 개발과 집행의 중핵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학생인권교육센터는 교육청 내에서 인권컨트롤타워로 자리잡는 것이 여의치 않았고, 학생인권옹호관이 교과부의 재의요구와 재의결 실패로 인해 임명조차 되지 못하면서 교육청 차원의 학생인권 집행이 계속 표류하게 되었음.

◦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자체적인 집행력도 필요하지만, 학생인권업무의 특성상 교육청이 거의 전부와 협조하여 교육행정의 전 과정을 인권친화적으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해야 하고, 센터의 조직적 위계상 평생진로교육국-책임교육과의 차원에서 이것이 가능하도록 뒷받침해 줘야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 현실적 어려움에 봉착했음.

6) 학생인권조례 29조 6항: 학교의 장은 학생들에게 학생인권에 관한 교육을 학기당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참고: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업무 (조례 제42조 제2항)

1. 학생인권에 관한 법령·제도·정책·관행 등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생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조사와 구제, 유형 및 판단기준, 그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3. 학생인권상황에 관한 실태 조사 및 정보·자료의 조사·수집·정리·분석 및 보존
4.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6. 그 밖에 학생인권옹호관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학생인권옹호관은 직무상의 독립성을 보장받는 상임 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되어 있으며, 학생인권교육센터장을 겸하도록 되어 있어 학생인권 집행에 관한 실질적인 책임을 지는 역할을 하는 위치임. 하지만, 학생인권옹호관이 임명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학생인권에 관련된 일관성 있고 안정된 정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

※ 참고: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 (조례 제39조)

1. 학생인권 관련 실태조사 및 정책, 지침 등의 연구·개발
2. 학생인권침해 및 학생복지에 관한 상담
3. 학생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조사 및 직권조사
4. 인권피해자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
5.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적절한 시정 및 조치권고
6. 학생인권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
7. 인권교육에 대한 교재개발 등의 지원 및 정기적인 인권교육 시행
8. 학생인권위원회 및 참여단의 업무 지원
9. 학생인권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의 집행
10. 학생인권영향평가서 작성 지원 등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한 사항

8. 5) 학생인권위원회, 학생참여단의 활동

○ 학생인권전문가/활동가와 교육관련 대표성을 가진 단체들이 추천한 이들로 구성된 ‘학생인권위원회’와 공개모집된 100명의 학생들로 구성된 ‘학생참여단’은 조례가 규정한 일종의 학생인권거버넌스 조직이라고 할 수 있음. 이 두 기구를 통해 학생인권에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을 받는 것은 서울 학생인권 업무 수행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음

○ 학생인권위원회는 2012년 5월 31일 구성된 이후, 올해 1월까지 총 7번의 전체회의(조례상 정기회의는 연 4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음)를 개최하고 소위원회(기획홍보소위, 권리구제소위, 인권교육소위)를 구성하여 별도의 회의를 개최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해 왔음. 특히 학생인권조례 정착을 위해, 인권교육센터 업무를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검토했으며,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종합 권고에 따른 교육청 이행 계획 검토와 위원회 입장을 발표하고, 학생인권 관련 항의서한,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지속적으로 교육청의 인권업무를 자문하고 독려하는 역할을 해왔음. 하지만, 자문기구로서의 한계로 인해 교육청의 인권업무를 실질적으로 견인해내기는 역부족이었으며, 소위원회의 활성화, 학생참여단과의 관계 설정 등이 과제로 남아 있음.

※ 참고: 학생인권위원회의 업무 (조례 33조 2항)

1. 학생인권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 및 결과에 대한 평가
2. 학생인권종합계획의 연도별 시행 계획에 대한 자문 및 결과에 대한 개선 권고
3. 학생인권이 중대하게 침해되어 특별한 구제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정책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안에 대한 학생인권옹호관의 조사결과에 대한 심의 및 구제 조치 권고
4. 교육감의 교육정책 및 입법 활동에 대한 학생인권영향평가 및 개선 권고
5. 학생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입법, 정책, 교육활동 및 기타 사회활동에 대한 의견 표명
6. 학생인권에 대한 지역사회의 여론 형성을 위한 토론회 등의 공론화 활동
7. 학생인권 현황에 대한 연례 보고서 등 연구·조사 보고서의 발간
8. 이 조례에서 정한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자문
9. 학생인권지원센터의 활동에 관한 평가
10. 그 밖에 교육감, 학생인권옹호관 또는 위원회 위원 3명 이상이 제안한 사안에 대한 심의

○ 학생참여단은 두 차례 공식회의를 개최하고 서울학생인권조례 위반 실태조사를 수행하는 등 나름의 활동을 전개하였으나, 그것이 교육청 정책으로 수렴되는 과정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교육청에서 학생참여단 활동의 안착을 위해 적극적이고 충분한 행정적 지원이 제공했다고 보기는 어려웠음

※ 학생참여단의 업무 (조례 37조 4항)

1. 교육감의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2.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의 개정에 관한 의견 제시
3. 학생인권실태조사에 관한 의견 제시
4. 학생인권실천계획에 관한 의견 제시
5. 학생인권옹호관의 조사 및 그 권고에 대한 의견 제시
6.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의 날」 자치행사 주관
7. 학교규칙을 포함한 제반 학교규율에 대한 의견 제시
8. 그 밖의 학생인권 증진 및 학생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3. 전망과 대안

○ 학생인권조례의 시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학생인권조례의 핵심 내용이 그대로 집행되는 것임. 즉 조례를 준수하고 조례의 정신을 구현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중요함. 그런 점에서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다음의 기본적인 제도가 시급히 시행되는 것이 시급히 필요함.

- 학생인권옹호관 조례 의결과 학생인권옹호관의 임명 (조례 제38조)
- 학생인권영향평가 시행 (조례 제43조)
- 학생인권종합계획의 수립 (조례 제44조)
- 학생인권종합계획 연도별 시행계획과 실태조사 실시 (조례 제45조)

- 학생인권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실시 (조례 제46조)

※ 학생인권영향평가 (조례 제43조)

- ① 학생인권위원회는 교육감이 제정, 입안하려고 하는 조례나 정책 등이 학생의 인권 및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조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평가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② 교육감은 조례나 정책을 입안할 경우 학생인권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교육감이 특별한 사유 없이 학생인권영향평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추진 중인 조례나 정책 등이 학생인권의 보장에 반한다고 판단할 경우 이의 개선 또는 중단을 권고할 수 있다.
- ④ 교육감은 제3항의 위원회 권고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학생인권종합계획의 수립 (제44조)

-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을 증진하고, 학교문화와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등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를 실질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한 종합계획(이하 “학생인권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② 학생인권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형성의 기본 방향
 2. 제1호의 기본 방향에 따른 단계별 실천전략
 3. 학생인권종합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학생인권 관련 정기적인 조사·연구 및 인권 교육 실시 방안
 5.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지역사회의 협력과 공론화 방안
 6. 교육과학기술부 및 다른 지역 교육청과의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
 7. 학생인권종합계획 실행에 대한 평가방안
 8. 그 밖에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형성에 관한 주요 사항

※ 학생인권종합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및 실태조사 (조례 제45조)

-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종합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학생인권 관련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생인권종합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③ 교육감은 학생인권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체적 지침을 마련하여 각 학교에 제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학교의 장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④ 교육감은 제1항의 평가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학생인권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조례 제46조)

-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지역순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학생, 교직원, 보호자,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학생인권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는 시민활동을 지원하고 협조체제를 구축하

여야 한다.

-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생인권위원회와 학생참여단이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의 지원이 필요함.
- 학생인권교육센터가 교육청의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고, 교육청 위계에서 적절한 조직적 위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교육청 내의 실행기구(학생인권옹호관, 학생인권센터, 보좌관, 기타 관련 부서)와 자문기구(학생인권위원회, 학생참여단)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학생인권조례의 초기 정착을 지원하고, 교육청의 운영과 각종 계획에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학교현장에 학생인권 조례 정착을 위해 필요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됨. 그리고 학교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이를 지원하고 실행 할 교육청의 계획과 지원 체계가 절실한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서는 학생인권위원회가 제안한 학생인권위원회 의안 12-14 <인권친화적 학교 인프라 구축과 교육청 지원체계안>이 참고가 될 수 있음

단계	주요 내용	학교 현장 인프라	교육청 지원 체계
1단계	학생인권조례 홍보	- 포스터 부착 - 인권교육 실시	- 포스터 제작.배포 - 인권교육 강사풀 구성.운영
2단계	학생인권 존중 공감대 형성	- 학생인권 동아리 운영	- 인권친화적 학교 및 생활교육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 학생인권옹호관 취임식에 학생, 교사, 학부모 등 초청 -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의 날」제정과 홍보 계획 마련 - 인권교육센터 방문프로그램(1시간) 마련
3단계	인권친화적 학교 인프라 구축	- 생활지도부를 생활인권부로 명칭 변경 - 학생생활규칙 제.개정 등 - 학생자치로 인권조례 정착 모니터단 운영 (예: 학생회 내 집행부서에 인권부 구성, 학생인권 동아리, 모니터단 운영 등)	- 생활인권부 담당교사 연수 - '학교생활규정'모범 사례 발굴 및 홍보, 생활규정 제.개정 매뉴얼 제작.보급 - 학생인권조례 학내 모니터단과 협력체계 구축

4단계	내실 있는 인권교육 시행	- 대상별 의무교육 시행 - 교사 인권교육 역량 강화 등	- 인권교육 계획수립 - 인권교육 가이드 라인 및 표준 교안 마련 - 학생, 교사, 학부모 대상별 교육프로그램 개발 - 학교 내 인권교육 전담 교사 지정
5단계	추진 결과 점검 및 평가	- 학생인권조례 이행 관련 자체 점검 등 평가	- 학생인권조례 이행 평가들 마련 - 평가 후 교육청의 2013년 계획과 학생 인권종합계획 수립에 반영

<인권친화적 학교 인프라 구축과 교육청 지원체계>

2부 발제

[발제1] 학생인권조례 안착화를 위한 학생의 역할 / 정진(고등학생)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교복과 똑같은 일상으로 대변되는 중, 고등학교에서 막 나와 이제 고등학교에서 할 일이라고는 다음 주의 졸업식만을 앞두고 있는 ‘정진’ 이라고 합니다. 요즘 대학 오티나 예비강의 등에 가다보면 정말 많은 것을 느낍니다. 다들 고등학생 때와 달라진 외면은 하나도 없는데, 분위기가 다르다고 해야 할까요? 사람들이 대하는 태도도 무언가 달라진 것 같은 느낌이구요. 정말 2010년 2월 고등학교에 처음 들어오던 때와는 정말 분위기가 극과 극이라고 느껴지네요. 우리나라 중, 고등학교의 ‘대입 우선주의’ 를 많이 실감하고 있습니다.

전 사실 정치와 선거 자체에는 초등학교 2학년이던 2002년부터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단순히 아빠의 아바타일 뿐이었습니다. 제가 주체적으로 공약을 찾아보고, 분석하고 주체적으로 지지하는 후보를 결정했던 선거는 바로 2008년의 서울시 교육감 선거였습니다. 저는 그때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정책들은 거의 모두가 학생들과 연결되는 정책이 아닌가, 다른 선거는 모르겠지만 교육감 선거만은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 당시 제가 절대 잊을 수 없는 슬로건이 있습니다. 지금 감옥에서 치매가 걸렸다고 주장하는 교육감 후보가 내세웠던 슬로건이 이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의 미래만 생각 하겠습니다.” 여기서 ‘만’ 이라는 조사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꾸로 생각해봅시다. 아이들의 현재는 생각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조사 하나만으로도, 사람들의 학생인권 에 대한 인식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아예 ‘학생’ 도 아니고 ‘아이’ 란 표현을 썼네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은 이런 사람들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 학생들의 미래만 생각하겠다는 후보는 저조한 투표율에 힘입어 간신히 당선됩니다.

이 당시만 해도 학생인권이라는 주제는 선거판에서 이슈로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2012년 서울교육감 재선거 당시, 학생인권 문제가 굉장한 이슈였던 것과는 매우 큰 차이가 있죠. 학생인권이라는 주제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2009년 경기도 교육감 선거부터였고, 2010년 전국적인 교육감 선거부터는 무상급식과 함께 큰 이슈로 부각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생각해봅시다. 왜 굳이 ‘학생인권’ 인가? 사람들에게 인권이란 모두 똑같이 적용 되는 것인데, 왜 굳이 ‘학생’ 인권을 강조하는가?

그것은 유독 학교 현장에서만 인권이 무시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6년 동안 인권이 심하게 침해되는 학교에 다니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인권이 확실히 보장되는 학교에 다니지도 않았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그냥 보통 학교에 다녔다고 보면 되려나요? 사실 저 같은 경우의 학생들이 제일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2010년 6월 ‘곽노현 18대 교육감’ 의 등장과 함께 서울에서도 학생인권조례 도입이 가시화되기 시작했고, 2011년 12월 19일 드디어 주민발의를 통해 서울에도 학생인권조례

가 도입되었습니다.

애석하게도 저는 서울 학생인권조례 공포와 동시에 그 유명한 ‘고등학교 3학년’이라는 시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지 없는지 교내에서 체감할 기회가 아예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라는 존재는 고1, 2와 완전히 분리됩니다. 제가 다음 주에 졸업할 학교의 경우 고3은 고1, 2와는 완전히 다른 건물을 쓰고, 심지어는 점심 시간도 1, 2학년들과 다릅니다. 이로 인해 고1, 2들의 점심시간이 10시 50분부터 11시 40분이라는 코미디가 펼쳐집니다. 고3의 점심시간을 정상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2년을 저런 황당한 시간에 밥을 먹어야 합니다. 고등학교의 모든 일상은 고3에 맞춰서 돌아갑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고3의 커리큘럼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이 정말 생생합니다. 1학기 때는 여기가 학교인지 학원인지 모를 정도로 진도를 정신없이 나가며, 2학기 때는 학교를 왜 나오는지 모를 정도로 하루 종일 풀로 자습만 합니다. 또한 모든 교재는 ‘EBS 교재’로 대체됩니다. 여기는 그나마 4월까지의 교과서를 나가더군요, 이런데도 불만이 은근했습니다. 다른 학교는 3월부터 ‘EBS 교재’로 나가는데 우리는 왜 두 달씩이나 수능하고 별 도움도 안 되는 교과서를 잡고 중간고사를 준비해야 하는 걸까? 하는 마음이지요. 부끄럽지만 저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입시 지향적인 학교를 긍정하고 있는 듯한 모양새였죠. 인권조례 8조에 보면 학생은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합당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부분의 고등학교는 일방적인 하나의 교육만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걸 학생인권조례가 백번 제정되더라도 결코 바뀌지 않을 우리나라의 고질적 문제가 아닐까요. 대입 관문을 막 통과한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 순간을 위해서 고3 1년의 시간을, 더 나아가 중, 고등학교 6년의 시간을 달렸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예비대학 프로그램에서 들어보니, 대학에서의 과목과 과제는 너무나 다양합니다. 교양과목 중에 ‘나의 역사’라던가, ‘사랑의 심리’라던가, 하는 과목들도 있으니까요. 특히 문과 과목들의 경우에는 시험이나 과제에서 서술형의 형식을 요구하는 과목이 많으며, 창의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문제들 역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왜 고등학교에서는 온종일 모든 것을 입시제도의 틀 아래에서 분석만 해야 할까요? 고등학교 때부터 창의력 사고를 키우고, 토론식 수업을 하고, 여러 교양을 쌓으면 안 되는 것일까요? 고등학교 3년간 요즘 인기인 ‘학교 2013’ 드라마에 나오는 ‘정인재 선생님’의 스타일로 수업을 한 것은 ‘실용영어회화’라는 과목 한군데에서 뿐이네요, 이 과목마저 선택과목 이었는데 ‘영어독해와 작문’을 선택한 아이들은 고등학교 3년 내내 단순한 입시공부만 했을 뿐이지요. 학교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입시위주 교육부터 과감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그 날이 언제 올지는 참 갑갑하기만 하네요.

하여튼 본론으로 돌아오면, 고3이었던 특수성 관계로 학생인권조례 공포 이후의 교내 인권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체감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다만, 어렴풋한 느낌으로는 이러한 이슈가 수면 위로 올라오기 전인, 2010년 봄 입학 당시나, 졸업을 앞두고 있는 지금 2013년 겨울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네요. 그때나 지금이나 학교 분위기는 그게 그거니까요. 체벌이 벌점으로 대체된 것, 이정도만 변화로 칠 수 있을까요? 저에게 보이는 학교는 학칙이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물론 이 학칙을 제정하는데 학생들의 의견을 듣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공립학교는 모르겠는데, 사립학교들에선 학생인권조례가 아무리 학칙보다 상위법이라고 해도 아무 효과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교육부에서는 아예 한걸음

더 나아가 학칙으로 인권조례를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를 계속 진행 중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학생의 입장에서는 학칙을 좀 더 민주적으로 바꾸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또한 ‘곽노현 18대 교육감’님이 2010년 선거 당시 언급한 것처럼, 학생 대표와 학교 대표가 자주 만나는 일이 필요하겠고,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도 학생회 등 학생 대표들에게 실질적인 발언권을 주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바라보면, 학생인권조례는 이제 진통을 겪는 단계입니다. 모든 것은 시작에 진통을 겪게 되어 있지요, 몇몇 학교는 인권조례가 있기 전부터 인권이 상당히 진척되어 있는 학교도 존재합니다. 이 시기를 넘기면, 모든 학교에서 학생의 인권을 자연스레 존중하는 분위기가 오지 않을까 조심스레 기대해 봅니다. 저는 이제 청소년 시기에서 막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청소년과 학생들의 지속적인 인권성장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2부 발제

[발제2] 학생인권조례 안착을 위한 교사의 역할 / 생활지도 혁신사례 - 영림중학교 교사 이명남

영림중학교 생활교육 사례

'학급공동체문화 살리기'

□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학급공동체문화 살리기

1. 운영 배경

2012년 학년부체제로 업무를 개편하고 담임들이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었기에 학년부체제 정착과 안정화를 위해 문예체 전문강사지원 예산에서 학급공동체 활성화 위한 활동(반가동영상 만들기, 수학여행(수련회) 등 학급생활의 추억을 사진으로 남기기, 학년별 체육대회 등)을 벌여 학급구성원 간의 친밀감을 형성하고 학습 외의 다양한 관심거리를 통해 자긍심을 갖게 하는 등 입시경쟁풍토에서 사라져가는 학급공동체문화를 살려 학교폭력예방에도 도움을 주고자 했다.

2. 운영 목적

- 1) 학급구성원 간의 친밀한 분위기 조성
- 2) 학교 행사에 수동적인 참여가 아니라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유도
- 3) 왕따·괴롭힘 등 학교폭력의 근본적 예방
- 4) 담임 중심의 학년부 체제 생활지도 업무 협조

3. 운영 내용(방법)

1) 3월 반가동영상 제작 및 학급규칙 만들기

어색한 학기 초에 학급규칙과 반가를 만들고 함께 춤을 추는 동영상을 제작하는 동안 서로의 장기를 발휘하고 친밀감과 협동심을 기르도록 하였다.

2) 5월 수련 및 수학여행 추억 동영상 제작

수련활동 및 각기 다른 곳을 여행한 수학여행지의 풍경과 친구들과의 추억을 담은 동영상을 만들며 수동적인 여행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친구들과 지내는 등 수련활동의 목적을 달성하고 또한 동영상을 학년별로 자치 시간에 방영함으로써 다른 여행지를 간접체험 하도록 하였다.

3) 1학기말 학년별 체육대회

1학년은 축구와 발야구, 2학년은 남녀 손잡고 함께하는 농구, 3학년은 줄넘기 대회 등 학년별 특성을 살려 각기 체육대회를 진행하는 동안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연습 시간 동안 학년 사이의 친밀감과 학급의 협동심을 갖게 되어 학기말 생활지도에 도움이 되었다.

4) 학년말 장기자랑 대회

3학년은 2학기말 고사 후 겨울방학까지 약 2달에 걸친 공백기 동안 3학년부에서 준비한 통합교육과 장기자랑을 병행하자 학생들이 졸업을 앞두고 마지막 추억을 남기려 열심히 임하여 자연스럽게 학년말 학급운영과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덜게 되었고, 1, 2학년도 2학기말 고사 후 학년별로 일정을 잡아 장기자랑 대회를 실시하여 학생들에게 공동목표를 달성해가며 학년말 마무리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이 장기자랑의 조건은 학급구성원 전원참여와 담임선생님 참여였기에 더 학급 잔치를 넘어, 즐거운 학교축제가 되었다.

4. 운영 성과

학급구성원의 친밀감을 복돋우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하도록 마련한 학급공동체 문화 살리기는 학급임원 뿐 아니라 예체능에 장기를 가진 다양한 학생들의 참여로 학생 참여 문화의 활성화 외에 행사 진행 과정 속에서 학년부 담임교사들의 회의 및 토론이 활발히 이뤄졌다.

5. 운영 모습



'부적응 행동에 대한 치유적 지원'

□ 부적응 행동에 대한 치유적 관점의 생활지도

1. 운영 배경

학교폭력이 화두가 되어버린 2012년, 학교폭력 예방에 왕도가 있을까? 방법은 다양할지라도 그 기본은 학생들 스스로 자신을 사랑하게 하는 방법이다. 자신을 사랑하게 하는 방법은 바로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대부분 부적응을 일으키는 학생들의 특징은 자존감이 낮은 경향을 보인다. 그래서 2011년은 문예체전문강사지원 예산을 받아 아이들의 '자기가치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러 활동(미술치료, 놀이치료, 춤동작치료, 글쓰기치료 등)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학교분위기는 서서히 안정되고 교사나 학생들에게 서로 신뢰하는 분위기가 생긴 것으로 보였다.

이어서 2012년에도 문예체전문강사지원 예산을 받아 자기효능감에 중점을 두고 학생생활지원을 해보고자 '생활지도부'에서 '학생생활지원부'로 부서명을 고치고, 교육복지일반지원학교 업무도 병행하며 명실상부한 학생들의 행복한 생활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2. 운영 목적

- 1) 학교부적응 행동의 결과보다 원인에 집중하여 근본적 원인 치유로 적응력 향상
- 2) 학교부적응 학생들의 학교와 교사에 대한 신뢰감을 높여 안정적 학습 분위기 조성
- 3) 왕따·괴롭힘 등 학교폭력의 근본적 예방
- 4) 담임 중심의 학년부체제 생활지도 업무 협조

3. 운영 내용(방법)

1) 1학년 집단 놀이연극치료 운영

집단 괴롭힘이나 왕따, 각종 수업 방해 및 비행 행동을 보이는 3개 학급을 대상으로 전문 놀이연극치료강사와 각 5회기 동안 치유적 상담을 실시함.

순간의 실수나 무지로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구성원 간 친밀감 형성을 목표로 진행하였는데, 만족스러운 효과를 보인 학급도 있고, 여전히 부적응행동을 보이는 학생도 있다. 그러나 비난하고 통제하는 방법으로 지도하지 않고 상담을 하는 동안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을 가진 경험만으로 학생들이 생활지원부 교사들과 신뢰감을 쌓아 부적응 행동에 대해 서로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는 만들어졌다.

이후 생활지도에 신뢰감을 바탕으로 부적응 행동에 대해 적극적인 개입이 가능해졌다.

2) 지역사회기관과의 연계 프로그램 진행

지역사회의 '구로여성회'의 삼성꿈나무장학재단 사업의 일환으로 2년간 여학생 10명이 지속적인 정서적 지지와 각종 취미활동과 학습보조 활동으로 학생들의 변화가 올해부터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목표설정과 성취에 대한 의욕이 높아져 인성뿐 아니라 학업 면에서 괄목할 변화가 일어나 2학년 때까지도 간간히 보이던 부적응 행동이 사라졌다.

3) 학생들과 함께 공동벽화 제작하기

2011년 매점 주변의 공동벽화 제작에 이어 올해는 학생들의 의견에 따라 그동안 지하에서 흰색 벽으로 특징 없고 생기 없던 학생식당의 벽을 학생들과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화사한 그림으로 새롭게 꾸며 보았다.

영림중 나름의 명소(?)로 만들기 위해 학급에 광고를 내어 신청자를 받거나, 담임의 협조로 추천받은 소극적인 학교생활을 하던 학생들과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학생들을 추천받아 10일간 작업으로 완성된 벽화는 성취감과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과정이 되는 목표를 달성하였다.

4) 지역사회 기관과 연계한 특별교육

2011년에 이어 학교폭력 등으로 징계를 받은 학생들에게 자신의 힘을 좋은 일에 사용하도록 학교 주변 지역아동센터에 의뢰하여 배려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 일하는 지역아동센터 교사들에게 또 다른 배움을 갖도록 하였다.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 자신의 힘을 사용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고 학교부적응 학생 중에는 가정적으로 불우하여 학교 후 보호가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지역아동센터와 연계될 기회도 갖고자 하였다.

5) 지역사회기관과 연계한 심리상담

2011년에 이어 학교인근의 심리상담기관과 연계하여 징계를 받은 학생들의 문제 행동에 대한 근본원인을 치유하기 위한 심리상담 지원을 받았다.

상담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상담을 받기 전 학생 스스로 정한 상담의 목표와 학교에서 원하는 특별교육 의미에 맞는 목표를 함께 의논하여 정한 뒤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임으로써 변화 성장을 이끌어내도록 하였다.

4. 운영 성과

어떤 사람에게 강한 기대감을 품으면 그 기대감을 상대방도 느낄 뿐만 아니라 그 기대에 맞춰 행동하게 된다는 것, 이 효과를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한다.

잠재력을 믿으면 애정과 기대가 커진다.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더 노력한다. 결과가 좋으면 애정과 기대는 더 커진다. 학생들의 잠재력을 믿고 학생들의 자기 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일련의 활동이 문예체지원 전문 강사 지원 예산을 학급공동체문화 살리기 예산과 나눠 사용하다보니 예산 부족으로 2011년보다 다양하지는 못 했지만 2, 3학년의 경우는 학급공동체문화 살리기 등과 2011년의 여러 활동으로 이미 학생과 교사의 신뢰감 형성이 있었기에 올해는 작년보다 적은 활동으로도 안정된 학교생활이 가능했다고 여겨진다.

5. 운영 모습



'담임중심의 학년부체제 개편'

□ 담임 중심의 학년부 체제 개편으로 생활지도

1. 운영 배경

학교폭력이 화두가 되고 교육이 무너진다는 우려 속에 교육을 살리는 방안으로 과감히 담임의 업무를 줄여 생활지도와 수업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서울시교육청의 학년부체제 개편안을 수용하여 생활지도 업무에 충실하도록 담임 업무를 과감히 줄이고 비담임 위주로 업무를 배정하고 교무행정사 2명을 배치하여 행정적인 일을 지원하였다.

학생생활 상담 및 지도를 위한 시간적·심리적 여유가 턱없이 부족한 이유가 행정면의 과도한 업무 때문이라는 생각으로 담임교사의 업무를 줄인 것이 비담임 교사에게 업무가 많아져 무리가 될 수 있는 우려를 담임교사들도 담임업무와 병행하여도 무리가 없는 업무를 맡고 또한 담임들의 적절한 생활지도로 비담임 교사들의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했기 때문이었다.

2. 운영 목적

- 1) 기피업무가 된 생활지도 업무 분산을 통해 업무 부담률 감소
- 2) 교사와 학생의 신뢰도를 높여 왕따·괴롭힘 등 학교폭력의 근본적 예방
- 3) 생활지도 및 수업연구, 학교교육활동 등에 담임교사 간 소통의 장 마련
- 4) 학교 안의 작은 학교 운영으로 다양한 교육활동 실험의 장 마련

3. 운영 내용(방법)

- 1) 각 학년 교실이 있는 층에 학년부실을 배치하여 효율적인 학생생활지도가 되도록

하였다.

2) 각 학년별로 부장을 중심으로 생활지도 담당교사를 4-5명 배치하여 담임들의 기본적인 생활지도와 병행하여 체계적으로 원칙을 따르는 생활지도를 하였다.

3) 각 학년 별 생활지도 협조방안을 마련하여 업무의 중복과 충돌을 피하도록 하였는데, 1학년은 기본생활습관, 2학년은 선도, 3학년은 흡연예방을 중심 생활지도업무로 총괄 책임지고 학생생활지원부는 폭력대책자치위원회와 선도위원회 외의 교내봉사 이외의 추수 지도를 총괄하기로 하여 부서 간 긴밀한 업무 분담과 협조로 생활지도를 분담하여 부담감을 줄였다.

4) 생활지도 업무를 맡지 않은 담임은 기존의 업무 중에서 업무 부담이 적은 업무를 맡아 학교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비담임교사들의 업무부담률도 줄여주는 효과를 보였다.

4. 운영 성과

각 학년부의 생활지도 담당 선생님이 각 4-5명 (부장, 선도, 학교폭력, 기본생활습관, 추수지도 담당) 학생생활지원부에도 3명 (부장,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추수지도 담당), 배움터지킴이 2명 등 작년 13명보다 인원이 17명으로 증가되고 각 학년 별로 생활지도의 책임성이 강화되었다. 담임들의 생활지도가 잘 이루어져 예전에 생활지도부에 의존하던 징계위주의 강압적이고 통제적인 방법의 생활지도가 아니라 예방적이고 치유적인 생활지도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할 수 있다.

또한 학생 사안 발생 시 한 부서에 모인 담임들의 긴밀한 협조로 빠르고 적절한 지도가 이루어져 선도위원회에 해당되는 사건 발생이 줄었다는 것도 변화의 한 부분이다. 작년에 비해 같은 시기별 대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수나 인원도 적고 선도위원회의 사안 내용도 근태사항이나 미미한 사안 발생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또한 팔목할 사항은 학생들의 학교폭력 사안이 '왕따'나 집단적이고 지속적인 괴롭힘보다는 우발적인 것이 대부분이었다는 점이다.

우리학교 회장선거 이야기

2012년 2학기 기말고사를 한 달여 앞둔 11월 중순에 2013학년도 학생회장 선거가 있었다. 그리고 일주일의 선거기간과 그 후 열흘 정도 학교는 소란스러웠다. 즐겁지 않은, 전혀 유쾌하지 않은 소란이었다.

*사건 배경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지난 3년간의 이야기를 해야만 한다. 나는 이 학교에 2010년부터 근무하였다. 처음에는 잘 몰랐다. 그냥 처음 하는 담임이 즐거웠다. 하지만 점점 이 학교에 대해 알게 되었다. 의사결정구조가 폐쇄적인 것은 여느 사립학교와 다를 바 없었으나 그에 대해 발언하거나 문제제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것은 조금 이상했다. 교사들도 학생들도 순종적이었다. 그래서 2011년부터 나는 하나하나 급한 것부터 문제를 제기하였다. 처음 제기했던 것은 학생회였다. 수십 년간 우리학교의 학생회는 봉사의 업무만 하고 있을 뿐 자치의 역할은 거의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학생회장과 부회장은 전교생의 투표로 선출하지만 나머지 십여 명의 임원들은 교사들의 면접으로 선발되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학교에 순응하는 학생들로 대부분 구성되었다. 그러다보니 학생회의 힘은 약하였고 학생들은 투표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아는 언니를 뽑는 경향이 있었다. 이 구조를 바꾸고 싶었다. 수업시간과 담임이라는 직분을 이용하여 최대한 민주주의와 학생회의 역할에 대해 강조하였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학생들이 스스로 만들어나가게 돕는 것이었다.

그리고 2012년의 선거에서 문제는 시작되었다. 한 학생이 회장선거에 출마하려고 하였으나 성적이 40% 이상이어야 한다는 후보자조건에 1%가 모자라 피선거권이 박탈된 일이 생겼다. 난 그 학생을 돕기로 하였고 인권위에 제소하려고 하였으나 학생은 겁을 내고 입후보를 포기하였다. 그 소식을 들은 우리 반의 한 학생이 선거에 출마하였다. 성적에 의한 차별철폐가 공약이었다. 각 학급에 학교의 문제와 학생회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는 전단을 붙이며 홍보하였고 그동안 성적에 의해 차별받으면서도 참아왔던 많은 학생들은 선거를 통해 자신들의 의지를 표현하였다. 그리고 그 후보는 당선되었다. 학교는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랐을 것이다. 그래서 선거관리규정에 한 조항을 넣었다.

‘학교의 허락을 받지 않은 홍보물은 교내에 부착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후보자격 박탈.’

*사건 전개

2012년 가을의 선거 문제는 그 조항으로 인해 시작되었다. 현 교장의 취임 후 3년 간 학생들의 불만이 커졌다. 이유는 소통의 부재가 가장 컸다. 그전까지 있었던 홈페이지의 익명 게시판이 갑자기 로그인게시판으로 바뀌었고 어느 날 갑자기 흰 양말만 신으라고 지도하기도 하는 등 사소한 것에서부터 현 교장의 학교관리에 학생들의 비난의 목소리가 커졌다. 특히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었지만 전혀 바뀌지 않은 생활지도규정에 가장 큰 불만을 갖게 되

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학교 학생회가 설문조사를 하려는 것을 막은 해 학생회 임원들을 설득하여 동의하게 하고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의 동의를 통해 마치 전체 학생들과 학부모, 교사들이 동의한 것처럼 생활지도규정을 유지한다고 발표한 교장의 행동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선거를 통해 학생회가 보다 강해져야 한다고 믿은 한 학생이 후보가 되었다. 그 외 대부분의 후보들도 학교의 문제를 인식하였기에 익명게시판 부활 같은 소통을 요구하는 공약이 있었다.

그런데 그 공약들은 후보자들의 포스터엔 없었다. 대부분 수정되었다. 위에서 말했던 그 조항 때문이었다. 생활지도부 교사는 검사를 핑계로 수정을 요구하였고 수정에 응하지 않으면 후보자격이 박탈된다고 믿은 학생들은 모두 수정하였다. 그리고 선거 마지막 날의 연설문도 학교는 검사하였다. 그런데 4명의 후보는 모두 검사를 마쳤는데 강한 학생회를 요구했던 그 A후보는 검사는 받았으나 수정을 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리고 나에게 전화하였다. 난 수정하든 하지 않든 후보자격과는 무관하니 선택하라고 조언하였다. 그런데 수정하지 않으면 선거에 이기더라도 매우 피곤한 일들이 많이 생길테니 그 각오는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후보는 원본대로 연설하였고 다른 후보들과 차별화된 내용덕분인지 당선되었다.

문제는 이때부터 커졌다. 낙선된 학생이 이의를 제기하였다. A후보가 검사를 받아야한다는 조항을 어겼고 특정교사와 통화하여 도움을 받았으므로 당선무효라는 것이었다. 그 후의 이야기들은 간단하게 정리하겠다. 너무 많은 일들이었기 때문이기도 하며 내가 없는 곳에서 벌어진 일들도 많기 때문이다. 아래의 내용이 완전한 사실은 아닐 수 있으며, 내가 듣기만 한 일은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한다.

우선 학교는 이의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학생회가 자신들이 결정하겠다고 했다. 학교는 학생회에 결정을 맡겼다. 그게 금요일이었다. 그리고 학교가 정한 학생회 회의시간은 월요일 오전까지였다. 금요일 밤 A후보는 나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였다. 자신의 당선보다는 학교가 문제를 깨닫기를 바란다. 난 서울시교육청 인권교육센터와 청소년 인권단체 ‘아수나로’에 도움을 청했다.

토요일, 학생인권위원회와 통화를 했고 시의원 김형태 선생님께도 도움을 청했다. 후보자들의 설득도 겸했다. 낙선자든 당선자든 모두 피해자임을 설명해주고 싶었다. 당선무효는 옳지 않으니 다섯 후보가 합의를 한다면 재선거를 할 수 있음도 알려주었다. 합의가 되는 듯 하다 깨졌다. 낙선자들끼리만 합의했다. 당선을 무효 시키기로.

일요일, 학생인권위원회 한상희 위원장, 김인식 위원 등과 통화하며 조율했다. 정식으로 긴급구조 민원을 제출했다. 3학년 학생들(처음 학교에 반항적이었던 회장과 그 친구들) 여럿이 모여 학교의 문제를 고발하는 전단지를 만들었다. 월요일 아침 수백 장을 돌려 학교의 결정을 막기로 한다.

월요일, 아침 일찍 3학년학생들은 전단을 뿌렸다. 학생회 회의가 소집되었고 결정은 오래 걸렸다. 그 결정을 유보시키기 위해 교육청에서 몇 분이 다녀갔다. 학교에 결정을 유보하라 요청하고 모든 자료를 받아갔다. 학생인권위 긴급회의가 소집되었다. 시의원 등의 문자들을 통해 학교외부 상황을 알게 되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학생회 회의결과가 나왔다. 결과는 당선무효, 하지만 학교는 발표하지 않았다. 학교는 교무회의를 소집하고 인권위원회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했다. 교장은 눈물을 보였다. 사랑으로 가르친 것뿐이라고.

인권위 결정이 나오기까지의 학교는 조용한 난장판이었다. 삼삼오오 모이면 학교이야기에 바빴다. 학교는 나를 문제 삼았다. 여러 동료교사가 나에게 꼭 그래야했냐고 했다. 학생들도

반으로 갈렸다. 3학년은 A후보 편이었고 2학년은 낙선자들 편이었다. 일학년은 자기 학급의 이해에 따라 반반으로 갈렸다. 2학년이 낙선자 편이었던 것은 A후보가 그동안 학생회에 비판적이었기 때문이다. 학생회는 모두 2학년으로 구성되어있다. 그리고 2학년으로 구성된 선도부와 A후보는 마찰이 있었다. 선도부는 학생들을 매주 수, 금요일 아침마다 등굣길 학생들의 복장과 두발을 단속하고 정기적으로 조회시간 각 학급에 들어가 학생들을 불시에 단속한다. 그러다보니 1학년과 2학년은 마찰이 생긴다.

마치 드레퓌스사건과 같았다.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의 재판을 보는 듯도 했다. 악법은 어겨서 바뀌야 한다는 편과 순진하게 규칙을 준수한 것은 죄가 아니다 라는 편으로 나뉘었다. 난 어느 편도 아니었다. 이렇게 만든 학교만이 미움의 대상이었다.

인권위 결정이 나왔다. 당선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최선의 방법을 찾고 학교는 재발방지를 위해 규정을 수정하고 학교구성원들에게 발표하라는 것이었다. 학교는 선거관리위원회를 소집했다. 난 이미 학교가 두 패로 갈린 상태에선 재선거만이 답이라고 생각했고 위원자격을 가진 몇 선생님들께 부탁했다. 물론 그 전에 A후보의 동의를 구했다. 그 학생은 학교가 책임을 지고 사과한다면 괜찮다고 했다. 결국 학교의 결정은 완전한 재선거였다. 학교는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사과와 함께 재선거를 공지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사과이긴 했으나 진심의 사과는 아니었다. 학생인권위원회의 권고안도 전부다 발표하지는 않았다. 그래도 학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는 것만으로도 성과였다. 지금까지 교장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을 테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은 디테일한 부분까지 알지 못했다. 그러다보니 흑자는 당선자가 유난스러웠거나 내가 학교랑 원래 잘 싸워서 생긴 일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였다. 시간이 지나 재선거는 12월 중순에 있었다. 3학년은 학교에 잘 나오지 않았고 1,2학년은 방학을 기다렸다. 선거는 조금 잊혀져갔다. 그래서 재선거에서는 기존의 당선자가 차점으로 부회장에 당선되었다. 아쉽지만 어쩔 수 없었다. 대부분의 학생들에겐 지나간 사건이니까. 회장으로 당선된 학생은 재밌게도 지난 선거에서 2등을 한 학생이었다. 3등으로 낙선하여 처음 이의를 제기했던 학생은 또 3등으로 낙선하였다. 아마도 동정심이 컸던 모양이다. 그래서 조용하던 2등이 이번에 1등이 된 모양이다.

*지금 그리고 앞으로의 이야기

당선된 회장과 부회장은 모두 나에게 수업을 받은 학생이다. 물론 이의제기했던 그 학생도 마찬가지다. 셋 모두 나와 다시 이야기를 나눴다. 나에게 가진 원망도 이야기했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도 함께 얘기했다. 이제는 힘을 모아 학교에게 소통을 말하자고 하였다. 정말 그럴 수 있을 지는 지켜볼 일이다. 수업시간과 조회종례시간 난 또 말한다. 민주주의와 학생회의 역할에 대해서. 3년만 참으면 넘어가는 학창시절이 아니라 후배들과 연계된 활동으로 교내 민주주의를 자리 잡게 하는 학창시절이 되면 좋겠다고 말한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교사나 학생회가 아니라 모든 학생들의 참여로만 가능함도 전한다. 점점 학생들의 마음에 변화가 생기길 기대해 본다. 올해는 새로 구성된 학생회를 도와 학생회의 권한을 확장하고자 한다. 가능하다면 의결기구의 성격을 강화하면 좋겠다. 그리고 대의원회의를 통해 대의민주주의를 실천하는 학생회로 거듭나도록 도울 예정이다. 학교에는 지속적으로 학생회의 역할에 대해 축소하지 말 것을 요구할 생각이며 선도부의 역할변화도 요구할 예정이다. 물론 이 모든 나의 요구의 배후는 학생이다.

*나의 소견

나에게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교육의 주체로 바로 서는 계기라고 보았다. 그동안 학교는 교육,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관리자 마음대로 운영되었다. 하지만 이제 그러지 말라고, 가장 많은 수의 구성원이 있지만 제대로 주체로 인식되지 못한 학생들도 이제 학교운영에 대해 발언권을 갖게 하라고 하는 법이 바로 학생인권조례라고 생각했다. 학교운영은 교장이, 학급은 담임이 모두 정하던 기존의 방식을 이제 학생들과 토론과 소통을 통해 정하고 함께 지키자는 약속이 바로 학생인권조례라고 생각했다. 비로소 학생이 교사와 동등한 인간으로 대우받게 되는 디딤돌이라고 믿었다. 1년이 지난 지금, 학교는 학생들에게 인권을 가르치지 않는다. 학생인권조례를 알리지 않는다. 학생도 알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학교는 3년간 잘 참으며 진학과 취업만 준비하면 되는 곳이다. 교사와 학생은 그런 면에서 서로 암묵적으로 합의하였다. 그 합의를 깨는 소수만이 집단에서 이탈하면 그만인 것이다. 한 학생이 어느 날 자신은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권이 침해되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하였다. 학생의 조롱을 받는 교사의 동영상을 보면 그 말에 일리가 있는 듯도 하다. 하지만 난 다시 물었다. 학생인권조례가 없어지면 학생이 교사를 조롱하는 일이 없어질까? 학생이 교사를 조롱한 것이 과연 학생인권조례 때문일까? 우리는 때로 정확한 인과를 따지지 않는다. 지금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학교 내에서의 교사와 학생간의 상호신뢰이다.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생길 문제는 없다. 상호신뢰의 부족에 의해 일어난 문제를 학생인권조례로 덮고 싶은 사람들만 있을 뿐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의 오류는 아마도 학생인권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교사와 학생들이 학생인권조례 전문을 정독 혹은 일독이라도 하기를 바란다. 그 후 학교의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입장에 맞게 학교의 특성에 맞는 학교규정들을 만들어가길 바란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학생들에게 법의 준수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법의 준수보다 법의 제정과정에서의 민주적 절차가 더 중요함을 가르치는 학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2부 발제

[발제4] 학생인권조례 안착을 위한 학부모의 역할, 뇌 과학을 통해 재조명한 학생인권(학부모 연구자료)

<목차>

0. 들어가며

1. 학생인권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들
2. '경쟁' 이 아닌 '협력' 이 발달을 이끈다! : 폭언과 체벌은 사라져야 한다!
3. "잠잠자자! 밥좀먹자!" 라는 요구는 과학적으로 타당하다!
4. '자율성' 이 창의적인 교육을 가능하게 만든다.
5. 나오며

0. 들어가며

서울학생인권조례 공포되고 시행된지 1년을 맞이하면서 기념토론회를 한다니 만감이 교차한다. 그 이유는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고 공포되고 시행되기 까지 교사-학부모-학생들을 포함하여 얼마나 많은 이들의 노고가 있었는지 잘 기억하기 때문이며, 동시에 아직도 학생인권에 대한 오해와 반감을 갖고 있는 분들도 엄연히 존재한다는 현실 때문이다.

때문에 보다 지속적인 실천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우리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는 경기와 서울에서의 성과에 기반 하여 타지역에서도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을 지역의 교육 시민 사회단체들과 함께 전개 중이다. 대표적으로 천안-아산 지역, 충북지역, 그리고 인천지역 등에서의 활동을 들 수 있다.

동시에 우리는 학생인권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설득하기 위한 담론의 개발, 구체적으로는 학생인권을 '인권' 이라는 당위론적인 접근만이 아니라 학생인권이 교육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설명하고자 이론적 실천을 경주하여 왔다.

그 일환으로 우리 학부모회는 '협력을 통한 인간의 전면적 발달' 이라는 교육의 본래적 의미를 복원하기 위하여 기존의 교육이론의 재구성을 목표로 교사, 교육학자들과의 공동의 연구활동을 통해 진전시켜 왔다. 오늘 발표하는 글은 그 성과물 중 하나로 최근 제출된 「뇌 과학과 '비고츠키' 그리고 학생인권」 이라는 논문에서 학생인권과 연관된 내용을 압축한 글이다. 부족하나마 이 발표문이 학생인권을 안착화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

1. 학생인권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들

학생을 단지 통제와 훈육의 대상으로 여기는 분들에게 학생인권은 여전히 불필요한 것으로 간주된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는 매우 불온한 것이라고 참주선동하고 있으며,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사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한다.

게다가 "버릇없고 무례한 아이들, 공부에 성실히 임하지 않는 아이들의 성적향상을 위해서는 여전히 체벌이 불가피하다" 는 그야말로 폭력적이고 반교육적인 발상을 버리지 못하는 교사와 학부모들도 여전히 존재한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학생인권조례를 도입하는 근거로 인권의 보편타당성을 인권의

당위성을 아무리 주장해도, 또 유엔아동권리협약, 유네스코의 교육차별금지협약 등을 예로 들면서 국제사회의 흐름을 아무리 설명해도 여전히 적지 않는 수의 교사, 학부모 그리고 심지어 학생들조차도 우리들의 이야기를 '맞는 말이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 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이 분들에게 학생인권이나 학생인권조례는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그저 '좋은 이야기' 로 들릴 것이다. 그 이유는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근본적인 원인 즉 학생에게 폭력적인 학교문화를 재생산하는 대학서열체제 입시경쟁교육을 해소하지 않고 학생인권은 완전히 보장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수능점수 몇 점 내신점수 몇 점에 따라 등급이 달라지고 갈 수 있는 대학이 달라지고 그렇게 임금과 사회적 지위가 결정되는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교사-학부모 심지어 경쟁논리에 이미 찌든 학생들에게 학생인권이란 그야말로 '그림의 떡' 에 불과한 것, '한가하고 배부른 소리' 로 치부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을 말할 수 있는 최소한의 형식적인 틀에 불과하다.

때문에 이제는 인권이라는 당위를 넘어 여전히 학생인권에 부정적인 혹은 학생인권에 대해 긍정은 하나 대학서열체제와 입시경쟁의 압박을 짓눌려 적극적으로 옹호하지 못했던 이들도 동참할 수 있는 근거가 제시될 필요가 있다.

2. '경쟁' 이 아닌 '협력' 이 발달을 이끈다! : 폭언과 체벌은 사라져야 한다!

학생인권에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분들은 학생들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 능력이 떨어지기에 불가피하게 성인에 의해 훈육 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인권은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물론 청소년들이 논리적 사고능력이나, 감정이나 충동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이다. 실제로 각종의 연구통계와 조사결과에 근거하면 청소년들은 충동조절 능력이 성인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 이들은 물건을 잘 잃어버리며, 금방 지시받은 내용도 잊곤 한다. 마치 기억력 장애를 겪는 사람처럼 매우 혼란스러워 한다. 정리정돈도 잘 못하여 번번이 부모나 교사로부터 지적을 받게 된다.

게다가 이들은 감정의 기복이 매우 심하며, 화를 잘 내고, 충동적인 행위를 보인다. 이들은 심지어 위험한 장난을 일삼고, 그것을 즐긴다. 호기심이 지나칠 정도로 왕성하며, 그 행위가 위험하다는 부모나 선생님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고를 치기 일쑤이다. 청소년의 건강에 치명적인 위험한 행동 예를 들어 흡연, 음주, 약물, 가출, 피임하지 않는 성행위 등은 대체로 남자의 경우 13세에서 시작하여 17-18세에 이르면 절정에 다다르다가 성인이 되면 사라지는 것으로 보고되며 이 시기에 여자의 경우 우울증 빈도도 높게 나타난다고 한다.

대체 왜 그런가? 그 이유는 바로 뇌에 있다.

인간의 뇌는 생후 2년간 급격하게 발달하며 만5세(6세)가 되면 성인 뇌의 95% 크기가 된다. 때문에 기존의 학설은 뇌가 5세 이전에 거의 다 성장하고 심지어 이후에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이는 성인의 지적능력과 아동의 지적능력의 차이는 어디서 발생하는지 그리고 성인과 아동의 중간단계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과 성인의 차이는 무엇인지 등의 질문에 답하기 어렵다.

뇌의 무게와 크기의 차이가 아니라면, 왜 청소년들은 충동조절과 감정조절에 어려움을 겪는가? 이에 대해 뇌 과학의 성과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7)

즉, 청소년기는 신경세포에 커다란 변화가 생긴다는 것이다. 인간의 신경세포는 태어날 때 최대치를 유지하다가, 더 이상 많아지지 않으며, 반대로 신경세포와 신경세포의 접합 즉 시냅스를 형성하며 이른바 가지치기 과정을 겪는다고 한다. 중요한 것은 이 시냅스가 우리의 학습, 경험, 관계 등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이다.

우리가 주목할 점은 청소년기는 이 시냅스가 폭발적으로 형성되는 시기라는 것이다. 여자아이는 11세, 남자아이는 12세 6개월 쯤부터 시작되며, 신경세포의 접합 즉 시냅스로 세포들이 가지치기된 결과 뇌의 회백질이 연간 0.7% 씩 감소한다고 한다. 가지치기는 자주 사용하는 세포의 접합관계는 유지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제거하는 방식으로 시냅스망을 재구성하는데, 전체적으로 25세쯤 그리고 뇌의 전두피질 같은 영역은 30세가 되어 마무리되기도 한다고 한다.

그런데 청소년기 뇌에서 또 다른 중대한 변화가 있다. 바로 수초화이다. 뇌는 회백질 뿐만 아니라 백질로도 이루어져 있으며, 청소년기에는 백질이 회백질보다 많다. 백질은 축삭돌기(신경세포에서 뻗어나온 기다란 돌기)를 둘러싸고 있는 막으로 이 막은 '미엘린(myelin)'이라고 불리는 흰색의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 이 '미엘린'은 방전을 막아주는 전선의 피복처럼 전열체 기능을 하여 신경세포 사이를 이동하는 전기신호를 최대 100배 빠르게 전달시켜 주는데, 이 '미엘린'으로 구성된 백질이 30대 이후에도 두꺼워지면서 50세에 이르면 최대치에 이른다.

뇌 과학에서는 이를 수초화(髓鞘化) 혹은 수초형성(myelination)이라고도 하는데, 이 수초화는 생존에 가장 필수적인 감각기관과 운동기관인 척추가 가장 먼저 시작되어 태아 때 완료되며, 대뇌와 소뇌 사이의 간뇌는 1세까지, 대뇌는 15세까지 진행된다. 그리고 대뇌 중에서도 전전두엽 영역 특히 전전두엽쪽이 느리게 진행되는데 이 부위가 바로 인간의 개념적인 사고와 비교와 예측 추론을 담당하는 곳이다. 전전두엽의 수초화는 20세 이후 왕성하기 진행된다. 때문에 20세 이하의 청소년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5-60대처럼 종합적이고 거시적으로 사고하기 힘든 것이다.⁸⁾

더욱 중요하게 수초화는 '해마'와 '뇌이랑'에서도 진행된다. '해마'는 뇌 중간에 자리 잡은 세포다발로 새로운 기억을 처리하는 영역이다. 또 '뇌이랑'은 뇌간과 척수로 연결되는데, 바로 이것이 인간의 가장 본능적인 반응(예를 들어 문을 쾅 닫고 싶은 혹은 배고픈 욕구)을 조절하는 부위로 알려져 있다.⁹⁾

이처럼 과거에는 아동이 걷기 시작하고 손이 민첩해지는 시기 즉 5-6세에 중추신경계의 수초화가 끝났다고 이해되었으나, 최근에는 청소년기에도 수초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이 밝혀진 것이다. 이쯤 되면 왜 십대 청소년들이 충동조절과 기억력 등에 어려움을 겪는지 추론이 가능해진다. 즉, 청소년들은 뇌에서 개념적 사고와 논리적 이성적 추론능력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의 수초화가 완성되지 않았으며, 기억을 관장하는 해마도 감정을 조절하는 뇌이랑도 마찬가지로 수초화가 진행중에 있는 시기이기에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십대 청소년의 뇌와 성인의 뇌는 같지 않다. 십대 청소년의 행동은 성인과 차이에 근거한 것으로 억압의 대상이거나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때문에 우리는 청소년 시기에 나타나는 차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차이를 차별로 왜곡시키는 전근대적인 교육방식을 혁파하고 재구성해야 한다.

7) 아래 내용은 『청소년 코끼리에 맞서다』 나탈리 르비살 한울림 (2011) 에 근거하였다.

8) 박문호 『뇌 생각의 출현』 휴머니스트 (2008) 100-101 쪽

9) 바버라 스트로치 『십대들의 뇌에서는 무슨일이 벌어지고 있나?』 해나무 (2004) 88-89쪽

앞에서 우리는 뇌과학을 통해 개념적인 사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 논리, 추론을 담당하는 부위인 전두엽이 성인이 되어야 완성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청소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내버려 두어야 한다는 무책임한 주장으로 치닫거나 혹은 청소년들은 미숙하니 철저히 훈육하고 통제하여야 한다는 식의 전근대적인 교육관을 옹호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교육의 목표는 인간의 전면적인 발달에 있으며, 이 발달은 사회적 협력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인간의 발달은 개체발생적으로 즉 청소년이 성인이 되면 저절로 발달하는 것이 아니며, 적절한 '교수-학습'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뇌 과학에서도 신경세포와 신경세포의 접합 즉 시냅스를 형성이 인간의 학습, 경험, 관계 등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이 '교수-학습'은 일방적인 지식의 주입의 과정, 훈육과 통제가 아니라 러시아 출신의 교육심리학자 '비고츠키'가 말한 것처럼 '이 교육과정은 교사와 학생의 체계적인 협력이라는 특수한 형태'로 나타나며, 이 협력이 '근접발달 영역'을 형성하여 발달에 기여하게 된다.

때문에 교사와 학생의 협력적 관계를 파괴하는 일체의 행위, 특히 체벌과 폭언과 같은 행위 그 자체로 반인권적일 뿐만 아니라 반교육적이며 발달에 역행하는 행태이다. 일각에서는 학생에 대한 체벌이 불가피한 이유로 학교폭력의 심각성 특히 극히 일부의 학생들의 동료학생과 교사에 대한 폭력이 거론된다. 물론 폭력행위 그 자체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그 행위에 대한 응분의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교사에 의한 폭언과 체벌 또한 폭력적인 학교문화를 재생산한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물론 십대 청소년들이 공격성향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그것은 교사의 체벌로 해결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십대 청소년들의 공격적인 태도는 생리학적인 원인, 입시경쟁과 같은 사회 심리적 요인, 과밀학습과 같은 열악한 학습 환경, 폭력적인 가정환경과 사회환경 등이 복합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한편 뇌 과학에 의하면 십대 청소년들의 공격적인 성향과 행동은 뇌의 '편도체'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성적 논리적 추론능력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성인이 되어야 발달하기 때문에, 십대 청소년기에는 상대적으로 뇌에서 편도체가 통제권을 갖게 된다. 그런데 이 편도체가 공격성을 좌우한다. 유인원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편도체의 자극정도에 따라 폭력성이 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런데 편도체를 자극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다. 이것은 공격적인 성향을 갖기도 하지만 동시에 용기를 내게 만들고 매사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게 만드는 물질이기도 하다. 반면 '세로토닌'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은 진정작용을 하는데 이 물질은 부모나 교사 그리고 동료학생으로부터 칭찬과 격려 그리고 위로를 받을 때 많이 분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¹⁰⁾ 결국 십대 청소년의 공격성향은 교사와 학생간의 협력적인 관계를 통해서 얼마든지 학생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을 갖출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학생에 대한 폭언과 체벌은 반인권적인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로 학생의 발달을 가로 막고 사태를 악화시키는 반교육적인 행동인 것으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협력이 교사와 학생만이 아니라, 학생과 학생사이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그를 통해 발달을 진전시킨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대표적인 예가 핀란드의 학교 수업이다. 이에 대한 관찰에 따르면 학생들이 서로 가르치고 배우면서 협동을 통하여 학습의 질을 향상시킨다.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속에서 보다 충실한 지식을 찾아내고, 지식

10) S.페인스타인 앞의 책 172쪽

을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고 한다.¹¹⁾

학생간의 협력 즉, 또래간의 협력의 중요성은 뇌 과학의 성과에 의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즉, 뇌 스캔 실험을 통해 인간이 협동을 하면, 상을 받거나 초콜릿 케익을 먹거나 코카인을 흡입할 때와 같은 영역에서 환하게 불이 들어온다는 것을 발견했다. 뇌의 그 부분은 ‘도파민’에 반응하고 즐거움의 만족감을 지공하는 뇌의 보상회로였던 것이다. 다시 말해 인간이 협동을 하는 것은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이며 이는 본능이라는 것이다. 또 인류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협동은 오랜 세월 동안 진화의 산물로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는 속성이라고 한다. 즉 인류는 그 탄생에서부터 자신보다 큰 사냥감을 잡기 위해, 또는 아이들을 길러내기 위해 서로 돕지 않으면 안됐고 그것이 인간 유전자속에 각인되었다는 것이다.¹²⁾

그러나 현재의 학교교육, 특히 한국의 입시경쟁교육은 또래간의 협력을 근본적으로 가로막고 있다. 동급생들은 경쟁의 대상이며, 학습효율성 혹은 수월성이라는 미명하에 점수로 학생들은 쇠고기처럼 등급화 되어 교사로부터는 물론 학생들 사이에서도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다. 또 수준별 수업 등 성적으로 분리된 상태에서 친구와의 협력을 통한 학습과 발달은 기대조차 할 수 없다. 엄청난 학습량과 지나치게 높은 난이도의 시험으로 심신이 지칠대로 지친 학생들이 협력을 통해 학습의 질을 높인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이는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의 기본적인 소통능력조차 가질 수 없게 만든다. 때문에 학생인권조례와 같은 형식적인 틀만이 아니라 인간의 전면적인 발달을 가로막는 경쟁교육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실천과 결합될 때만 보장될 수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2. “잠잠자자! 밥좀먹자!” 라는 요구는 과학적으로 타당하다!

우리는 청소년들의 잠잘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왜냐하면 생리적으로 뇌과 변화중에 있는 십대 청소년들의 수면시간이 성인의 그것보다 길기 때문이다. 이는 뇌 과학을 통해 증명되었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인간의 수면시간은 연령대별로 변화를 겪는다. 신생아들은 하루 16시간 이상을 잠을 잔다. 6개월이 지나면 12시간의 수면이 요구된다. 5세미만의 아이들도 11시간을 자야한다. 10세가 되면 9시간 그리고 사춘기 청소년들은 평균 9시간 15분 이상의 수면시간을 요구한다. 이후 성인이 되면 7-8시간 정도를 유지하다가 65세 이후에는 잠자는 시간이 줄어든다. 과학자들은 노인들이 초저녁에 잠들어 새벽에 일어나는 현상을 ‘전진성 수면 위상 증후군’이라 하며,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십대 청소년들의 증상을 ‘지연성 수면 위상 증후군’이라 한다.

인간의 수면시간을 결정하는 것은 뇌의 ‘시상하부’에 있는 ‘시신경 교차상핵’으로 알려져 있다. 완두콩 크기의 이것은 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과 빛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멜라토닌은 밤과 낮의 길이나 계절과 일조시간의 변화를 감지하여 생체리듬을 주관한다. 즉 밤이 되면 ‘시신경 교차상핵’이 멜라토닌을 분비하라는 명령을 보내, 1-2시간 내 우리 몸은 졸음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뇌가 변화 중에 있는 십대 청소년시기에는 이 멜라토닌의 분비가 최소 1시간에서 2-3시간 이상 뒤로 미뤄져 그 수치는 밤 11시나 되어야 높아지기 시작한다. 자연히 청소년들은 늦게 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아주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변화가 침팬지와 같은

11) 후쿠타 세이지 『경쟁에서 벗어나 세계최고의 학력으로 핀란드 교육의 성공』 북스힐 (2008) 128쪽
12) 바버라 스트로치 앞의 책 190쪽

유인원류에서도 발견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렇게 늦게 잠들고 늦게 일어나는 현상은 뼈의 성장이 끝나는 시점 즉 사춘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사라진다.

한편 십대청소년들이 이렇게 잠을 많이 자는 것은 시냅스 형성과도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¹³⁾ 우리 인간의 뇌는 어느 부분이 다른 부분보다 더 많이 잠을 자는 것으로 알려졌고 그 중 제일 많이 사용된 부분이 잠이라는 휴식을 취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의 시냅스 또한 강화된다고 한다. 흥미로운 점은 졸음을 오게 하는 50가지의 뇌 화학물질이 뇌세포간의 시냅스 구축에도 작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십대청소년기에는 파장이 느린 수면의 영역이 감소하기 시작한다. 이는 대표적으로 파장 느린 수면 단계의 특징(예를 들어 오줌싸개 아이)이 청소년이 되면서 감소되는 것과 연관된 것으로 설명된다. 그런데 이런 변화는 대뇌피질을 이루는 뉴런¹⁴⁾의 밀도가 일정 수준에 이르러야 즉, 대뇌피질이 회백질을 맹렬히 가지치기하는 과정에 도달해서야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이를 종합하면 십대 청소년들이 잠이 많은 것에는 과학적으로 충분한 이유가 존재했던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청소년들의 수면시간이 성인에 비해 긴 이유를 뇌 과학을 통해서 확인하였다. 그런데 이는 청소년들의 수면시간을 그저 보장해야 한다는 당위의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수면시간을 보장하는 것은 곧 학습능력은 물론 감정조절능력과도 연동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점을 주목해야 한다.

뇌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십대들에게 수면이 지나치게 부족할 경우 사고력과 감정을 제어하는 능력이 동시에 손상될 수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¹⁵⁾ 각종의 실험결과에 의하며 잠이 부족한 십대들은 감정과 생각을 동시에 효과적으로 처리하지 못했다. 오케스트라가 완벽한 화음을 내기 위해 각자 악기를 조정하고 조율해야 하듯이, 신경체계도 더 잘 연결되려면 휴식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른 학교등교로 십대 청소년들의 뇌는 혹사당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다. 수면부족은 호르몬의 전반적인 기능장애를 만든다. 그중에서도 스트레스 호르몬은 코르티솔의 상승을 유발하고, 포도당 처리기능을 저하시키는데 이는 비만과 당뇨병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더욱 중요하게 수면부족은 학습능력의 저하와도 연결된다. 인간의 수면은 몇단계를 거친다. 1단계 수면은 선잠이 든 상태로 뇌파가 여전히 활동을 하기 때문에 쉽게 깬다. 2단계는 체온이 떨어지고 뇌파가 느려진다. 3단계와 4단계는 가장 깊은 수면이다. 5단계는 이른바 REM(rapid eye movement sleep) 수면으로 뇌파가 깨어있을 때만큼이나 활발하기 때문에 역설수면이라고도 한다.

그런데 이 REM수면이 지속적인 뇌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이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충분한 수면이 학습능력을 높인다는 것은 실제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때 역설수면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역설수면 동안 대뇌피질이 활성화

13) 바버라 스트로치 『십대들의 뇌에서는 무슨일이 벌어지고 있나?』 해나무 (2004) 267-268쪽 참조
14) 뉴런은 신경계의 단위로 자극과 흥분을 전달한다. 신경세포체(soma)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고, 신경세포체와 거기서 나온 돌기를 합친 개념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뉴런의 기본 기능은 자극을 받았을 경우 전기를 발생시켜 다른 세포에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다. 이렇게 발생하는 전기 신호를 활동전위(活動電位:action potential)라고 한다. 뉴런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핵이 있는 세포 부분이 신경세포체이며 다른 세포에서 신호를 받는 부분이 수상돌기(樹狀突起:dendrite), 그리고 다른 세포에 신호를 주는 부분이 축삭돌기(軸索突起:axon)이다. 돌기 사이에 신호를 전달하는 부분은 시냅스(synapse)라고 한다. 두산백과사전
15) 이하 내용은 바버라 스트로치 앞의 책 256-258쪽 참조

되며, 각성상태에서 기억에 관여하는 해마 같은 구조가 역설수면 단계에서 더 활성화된다고 하며, 또 역설수면이 기억력과 학습을 강화하는 것과 장기기억에 중대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다.¹⁶⁾

수면과 꿈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꿈은 기억에 관련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한다. 특히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배울 때 잠은 그날 익힌 것에 뇌 속에 확고하게 자리를 잡도록 돕는다고 한다. 각종의 실험결과는 잠을 충분히 자는 사람이 그날 배운 외국어 단어나 수학공식을 더 잘 기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잠자는 동안은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지 않으니 뇌가 이미 들어온 정보를 효과적으로 갈무리한다는 것이다.¹⁷⁾

이런 이유로 유럽은 물론 미국의 일부에서도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충분한 수면을 위해 등교시간을 늦추고 있다. 몇몇 학자들은 등교시간을 늦추면 충분히 잠을 잔 학생들의 학습태도가 좋아지며, 십대의 범죄와 임신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간 (즉, 부모가 자녀를 돌보지 못하는 시간인 오후 3-6시 사이)에도 학생들이 학교에 있기에 그런 류의 위험도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한다.¹⁸⁾

한편 학생들의 수면시간을 보장하기 위하여 등교시간을 늦추게 되면 곧 아침밥을 먹을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된다. 그리고 이는 학습능력의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뇌는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하기 때문이며 뇌가 활동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포도당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뇌의 무게는 몸무게의 약 2%에 지나지 않지만 에너지 소비량은 전체의 20%에 육박한다. 만일 뇌에 필요한 영양소인 포도당과 단백질, 지방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면 뇌 활동은 지장을 받는다. 공복 때에 사고력이 흐려지는 것도 이 때문이며, 각종의 실험 결과에 말해주듯, 아침밥을 먹는 것은 활발한 뇌 활동에 필수적이다.¹⁹⁾

결국 십대 학생들이 지난 2008년 ‘잠 좀 자자! 밥 좀 먹자’ 고 외치며 0교시 폐지, 야간 자율학습 폐지를 요구하며 거리로 나온 것은 과학적으로도 타당한 주장이다. 학생들이 충분한 잠을 잘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게 될 것이며 그자체로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4. ‘자율성’ 이 창의적인 교육을 가능하게 만든다.

학생인권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말하는 분들은 대체로 청소년들은 미숙하다고 말한다. 이분들은 청소년들은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였기에 마땅히 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바로 그분들이 입만 열면 내 뱀는 말이 ‘창의적인 인재양성’ 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통제, 즉 외부로부터의 강제로 창의성이 형성될 수 있단 말인가? 단언하건데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은 교육의 본질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있음에 틀림없다.

앞서 살펴보았듯 십대 청소년들이 보여주는 불안정한 행동들은 ‘교수-학습’ 즉 협력을 통해 학생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교사와 학부모의 몫이다. 비고츠키가 “오늘 협력을 통해 할 줄 아는 것을 내일은 혼자서 할 수 있다” 고 말한 것처럼 교육의 역할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즉, 학생의 자율성을 고양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초중등교육 과정은 대학서열체제로 인해 입시경쟁교육으로 왜곡되어 협력적

관계 형성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명문대 진학률로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교의 가치가 매겨지는 상황에서 학생들은 강제적인 수업노동을 감내해야 하며, 교사는 학생들이 수업노동에만 몰입할 수 있도록 통제하고 감시하는 ‘간수’의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창의적인 인재양성이 가능하겠는가?

인간의 창의성은 외부로부터 강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창의성은 인간의 자유의지 즉 자율성에 입각할 때만 발현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창의성은 학습자 스스로의 필요와 학습자체가 즐거울 때 그리고 편협하지 않는 다방면의 지식을 일정한 수준이상으로 확보할 때만 만들어진다. 그러나 현재의 입시경쟁교육은 제한된 지식을 주입하고, 그 주입된 지식의 보존 여부를 확인하는 평가시스템을 기본 축으로 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창의성은 결코 발현될 수 없다. 또, 현재의 경쟁교육체제하에서 제한된 지식을 효과적으로 주입하기 위해서 억압적 기제가 동원된다. 학칙이 가장 대표적인 억압적 기제이다. 학칙으로 두발과 복장을 통제하는 것은 실상 학생들의 사고와 행동을 통제하는 효과를 낳는다. 학칙이 정해진 범주 내에서 행동이 제한되고, 당연히 사고의 방식도 그를 넘지 못한다. 심지어 학칙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것 그 자체가 불온한 것으로 간주된다. 더욱 문제는 그 학칙은 학생의 자발성과 동의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 학교와 교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강요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자유로운 상상력, 창의력을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다.

물론 어떤 사회나 집단에서도 규율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은 외부로부터 강요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만일 학생들이 체벌과 폭언 그리고 벌점과 같은 압박에 못 이겨 규율을 지킨다면 그것은 일시적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반교육적이고 반도덕적이며 반사회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다. 학생들이 자율성 없이 즉 자기 스스로의 판단과 조절능력을 갖지 못한 채 규율에 순종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규율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인 것이다. 이런 식의 규율의 강제는 결국 학생 자신을 속이고 타인을 속이는 결과를 낳게 된다. 때문에 필요한 것은 외적규율이 아닌 자율을 갖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심리학자인 ‘비고츠키’ 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교육학적 질문 속에서 자기 행동 숙달은 오랫동안 중심문제로 여겨져 왔다. 현재의 교육은 행위를 자발적 의지로 바꾸도록 제안한다. 외적 규율과 강제된 훈련 대신에 독립적 행동 숙달이 존재한다. 이것은 어린이의 자연적 경향을 억누르지 않으면서 그들의 자기 행위 숙달과 연관된다.”²⁰⁾

“..복종과 선의는 배후로 물러서고 자기 숙달의 문제가 전면으로 나오게 된다. ... 어린이는 자기 숙달을 통해서 복종을 배워야 한다. 자기 숙달을 토대로 복종과 의지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숙달 속에 복종과 의지가 포함 된다”²¹⁾

그렇다. 규율은 외적으로 강제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숙달되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스스로 숙달하는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수-학습’ 즉 협력적 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실제로 학습능력의 향상을 위해서는 학생의 자율성이 관건적이다. 체벌과 벌점 등 동원해서 외우게 하는 학습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겠는가?

한편 자율성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자치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자치활동

16) 장 디디에 뱅상 『뇌 한복판으로 떠나는 여행』 이세진 옮김 해나무 (2010) 155쪽

17) 니콜라우스 뉘셀, 위르겐 안드리히 『청소년을 위한 뇌과학』 김완균 옮김 비룡소(2008) 188쪽

18) S.페인스타인 『부모가 알아야 할 청소년의 뇌 이야기』 지식의날개(2008) 121쪽

19) 야마모토 다이ске 『3일만에 읽는 뇌의 신비』 서울문화사 (2001) 16-17쪽

20) 비고츠키 『역사와 발달』 4장 고등정신기능의 구조 4-17

21) 비고츠키 앞의 책 4장 4-18

은 그 자율성과 창의성을 진작시킨다. 이는 외국의 사례로도 확인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는 핀란드의 학생자치활동의 성과를 들 수 있다.

핀란드 교육에 대한 각종의 탐방보고서들은 일관되게 학생자치활동 즉 학생회 또한 학습자의 자율성을 증대시킨다고 말한다. 이때 학생회의 운영의 핵심은 협력적인 태도이다. 이는 기술이 아니라 사고방식이다. 학생회를 운영하면서 학생들은 함께 일하고, 서로 돕고, 서로에게서 배우면서 개방성, 역동적 관계, 집단적 토론, 공동의 문제해결 능력 등을 얻는다. 공동으로 위협에 대처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론을 진전시켜 나가면서 학생회와 나아가 사회전체를 민주적인 공동체로 인식하고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든다. 학생들은 학생회 운영을 통해 타인에게 자신의 생각을 조리 있게 설명하고, 의견 차이를 좁히기 위해 협상하고, 논쟁하고, 함께 결정하면서 더 높은 수준의 인식능력과 추론능력을 갖게 된다. 상호 이질적인 개인과 집단들이 이 과정을 통해 열린 사고능력과 창조적인 사유능력을 획득하며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된다. 즉 구성원들 간의 차이는 문제점이 아니라 오히려 이점으로 작동하는 것이다.²²⁾

다시 강조하지만 창의성은 자율성을 근거로 발현된다. 그리고 이 자율성은 학생들이 멋대로 행동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교수-학습'의 과정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간의 협력을 통해 스스로 규율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학칙을 학교와 교사가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 만드는 것도 유효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는 학교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심성보'는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공동체 내부의 갈등을 폭력 없이 평화적인 방식으로 해결하고 이를 통해 자율적인 질서를 수립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학교교육의 가장 중요한 존재이유중의 하나다. 대화와 설득이 아니라 오로지 강제와 폭력으로 학생들을 통제하는 교사들을 보고 자란 학생들이 어른이 되면 그들도 배운 것이 그것뿐이기에 다시 힘으로 자기의견을 관철시키려 할 것이다. 규범의 내면화는 단순히 '착하게 살자'는 덕목을 되풀이해 암기하는 것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때문에 우리는 학교의 교칙을 학생들에게 준수하도록 일방적으로 명령하는 체계를 벗어나 규칙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학생들과 함께 공동으로 책임지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아이들의 욕구를 반영하여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규칙과 벌칙을 과정은 아이들을 자율적인 존재로 키우는 과정이 될 수 있다.”²³⁾

진정 우리가 교육을 통해 창의적인 인재를 길러내길 원한다면 그것은 바로 학생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확대하기 위한 노력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그 자율성은 방임이 아니라 '교수-학습'이라는 협력적인 관계로부터 만들어진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5. 나오며

이상의 논의를 통해 우리는 현대 뇌 과학의 논의를 통해서 청소년들의 뇌가 성인의 그것과 같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때문에 청소년들을 성인의 잣대로 규정하는 것은 그 자체로 문제를 양산할 뿐이다. 차이가 차별이 될 수 없듯이 우리는 청소년 시기에서 나타나는 생물학적

22) 한국교육네트워크 총서기획팀 『핀란드 교육혁명』 살림터(2010) 92-94쪽

23) 조엘 스프링, 심성보 『자율주의와 진보교육』 살림터(2010) 317쪽

인 특징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에 입각하여 청소년들의 발달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생물학적인 특징을 존중한다는 것이 자칫 청소년의 뇌가 성인의 뇌로, 사춘기가 지나면 알아서 해결될 것이라는 식으로 방치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곤란하다. 뇌 과학의 성과가 말해주듯이 인간의 의식이 고양되는 것은 뇌 그 자체 변화가 아니라 외부와의 능동적인 관계에 달려있다. 또 저차의식이 고차의식으로 발전하는 것은 언어(상징, 기호등)를 매개로 하는 '교수-학습'이라는 협력적 관계를 통해 발전한다.

이런 관점들을 종합하면 기존의 학생인권에 대한 논의와 실천 또한 더욱 풍부해질 수 있다. 즉, 학생인권은 당위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의 본래의 목적인 인간의 전면적인 발달을 위한 전제인 셈이다. 예를 들어 충분한 수면을 보장하는 것은 곧 학습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이며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또 '교수-학습'의 핵심인 교사와 학생의 협력적 관계를 파괴하는 체벌 등은 마땅히 근절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다. 학생의 자율성을 확립하는 것이야말로 창의적인 인재양성의 필수조건으로 두발, 복장의 자유는 물론이고 학생자치활동 또한 보장되고 장려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자료1] 참교육학부모회 동북부지회 평화인권교육자료

2012 평화인권아카데미

▣ 전체기획의도

1. 우리 사회의 폭력 문화가 학교폭력을 강화하고 청소년 자살을 부추기고 있다. 학교안팎의 일상적인 폭력 문화의 대안으로 생명존중감과 인권의식을 확산하고 평화로운 학교와 지역사회 문화를 만들어야 하는 기로에 놓여있다.

2. 이를 위해 평화로운 가정과 학교, 서로 배려하는 문화를 만드는 학부모와 청소년 평화·인권 활동을 적극화하여 학부모와 자녀의 의사소통 훈련을 강화하고 타인을 존중하는 인성교육을 확산하고자 한다.

3. 학교 내 인성교육을 넘어 열린 프로그램을 통해 가정안의 인권지수를 점검하고 비폭력 대화법을 통해 자신의 욕구를 인식함과 아울러 분노조절의 힘을 배우고 나아가 타인을 배려하는 존중감을 배양하도록 유도한다.

4. 스승과 학생이 서로 배려하는 문화를 배우고 학부모는 건전한 학교 참여를 통해 폭력 없는 평화롭고 민주적인 학교운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한다.

▣ 사업개요

사업명	사업내용	추진실적	자체평점
학부모 인권 아카데미	“평화로운 아이가 평화로운 학교를 만든다” 1강 상처받은 아이 마음에 폭력이 깃듭니다(정혜신) 2강 생명과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 만들기(조영선) 3강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아이로 키우기(송형호)	- 강의 3회 진행 - 학부모 450여명 참가 - 학교폭력의 근본적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해 지역사회에서 공론화 시키는 계기가 되었음.	★★★★★

폭력없는 학교를 위한 청소년 워크샵	“평화로운 학교, 내가 만든다” 1. 나는 소중한이다. 너도 소중한이다. 2. 평화는 훈련이다 - 비폭력 대화 기법 3. 평화로운 학교, 내가 만든다.	- 초등학교 2개 학년별로 3개 반으로 3회 진행 후 후속 프로그램 2회 추가 진행. - 반별로 10명 내외, 연인원 90명 참가 - 총 5회 활동 후 인권 퀴즈 대회 진행 - 강사와 학부모의 면담 및 평가회 진행(학부모 25명 참가) - 후속 청소년인권모임 ‘나는야, 평화지킴이’ 운영 중	★★★★★
평화언어를 위한 비폭력 대화	*강의 및 평화언어 구사 훈련 1. 연민을 방해하는 대화 2. 관찰하기/ 느낌을 알아차리기/ 표현하기 3. 자신의 욕구를 의식하기 4. 삶을 풍요롭게 하는 ‘부탁하기’ 5. 공감의 힘 6. 우리 자신과 연민으로 연결하기 7. 분노를 온전히 표현하기 8. 자신을 자유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돕기	- 총 8회(본 강의 6회, 후속 모임 2회 진행) - 회당 참가자 15명 내외, 연인원 110명 내외 - 강의와 훈련 진행 - 가정과 이웃 안에서의 비폭력대화 실습 사례 나누기 진행 - 후속모임 ‘마음이 어떻게 생겼을까?’ 격주로 진행 중	★★★☆☆
평화인권 영화제	*영화 상영 8회 (디벨레, 돼지가 있는 풍경, 별별 이야기, 파수꾼, 평화학교, 헬프, 1318 시선, 몽실언니 등)	- 학부모 및 초등학교 200여명 참가 - 영화 상영 및 전문평론가의 영화해설, 영화 관람 소감 나누기 진행 - 방학 중에는 자녀와 함께 관람 - 이후 격주로 평화인권영화모임 ‘영화함께’ 운영	★★★★★